

자료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국내언론관계판결
외국언론관계판결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언론법제관련문헌

PDAC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당사자의 신원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아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익 근무 판정을 받았음에도, 병역 회피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당했다.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TV조선 :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현역에서 ‘공익’으로」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5일 21:10)

내용 : [앵커] 조선일보 취재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박시장의 아들, 몇달전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허벅지통증을 이유로 귀가했었습니다. 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은 작년 8월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나흘만에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장선거기간 동안 본인이 양손으로 입양돼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점과 맞물려 아들의 병역의혹이 불거지자 “축구시합에서 부상당한 후유증때문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10월 말에는 재검을 받고 다시 입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박씨는 아버지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한달 뒤 재입영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수핵탈출증, 즉 허리디스크가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판정을 받고 공익근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취재를 한번 해보세요, 취재”

사건번호 : 2012서울조정27 정정청구

신청인 : 박원순

피신청인 : (주)조선방송

중재부 : 서울제7중재부

접수일 : 2012. 1. 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반론보도)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현역으로 입대하여 허벅지통증을 이유로 귀가조치된 신청인들의 아들이 재검에서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를 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아들이 자원입대 후 고등학교 때 입은 부상에 의한 통증으로 귀가조치 되었고,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익근무판정을 받은 것이며,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이 반영된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현재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이

[리포트] 그러나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던 박씨가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입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의 정정보도문을 TV조선 밤 9시 뉴스 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별지] 1. 제목: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익근무'

2. 내용: 본 방송은 2012년 1월 5일 밤 9시 뉴스프로그램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작년 8월 공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했으나, 나흘만에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 했으며,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된지 한달 뒤 재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가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던 박씨가 허리디스크로 4급판정을 받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도하면서,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 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과 군지정 병원 등에서 확인한 결과, 박씨가 작년 현역병으로 입영후 나흘만인 9월에 귀가조치된 사유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 발병한 대뇌부 신경손상으로 인해 하반신이 저리며, 허리통증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지난해 11월 25일 입영통지를 받고 군지정 병원인 해민병원에서 12월 9일 정밀재검을 한 결과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로 판명되었고, 이러한 본인의 지병에 의해 12월 27일 병무청 재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4급 판정)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박시장의 아들은 평소의 지병에 의해 적법한 절

차를 거쳐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이며, 본 방송에서 보도한 것처럼 병역을 회피하려는 어떤 의혹도 없으므로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 (반론보도)

<합의내용>

1. 보도문

가. 제목: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관련반론보도
나. 내용: TV조선은 지난 5일 「9시 뉴스 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이 현역 입대했다 귀가한 뒤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일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측은 작년 공군에 자원입대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입은 부상으로 인한 하지방사통과 허리통증 등으로 군복무가 어려워 귀가조치됐고, 이후 군지정 병원의 검사와 병무청의 재검을 통해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허리디스크가 인정돼 4급 판정을 받았으며 병역을 회피한 적도 없고, 회피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 후 최초로 방송되는 TV조선의 「9시 뉴스 날」 프로그램(21:00~22:00)에서 별지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앵커로 하여금 다른 기사들과 같은 형식으로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이 때 자막은 "박 시장 아들 병역 회피한 적 없어"로 하여 계속 표시한다.

3.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news.tv.chosun.com>)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제1항의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며,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주유소협회의 불법후원금 제공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내부고발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2서울조정42·43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이○○
 피신청인 : (주)제이티비씨
 중재부 : 서울제5중재부
 접수일 : 2012. 1. 11.
 처리결과 : 기각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주유소협회가 국회의 특정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음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인터뷰를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불법 후원금과 관련한 내부 고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부 고발자 인 양 보도되어 피해를 당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이 사건 보도에서 신청인의 성명 또는 직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보도의 변조된 음성만으로는 신청인의 음성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며 기각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JTBC : 「뉴스 10」 프로그램 ‘JTBC 단독보도 “주유협 집단로비” 폭로’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6일 22:21)

내용 : [앵커] 주유소협회가 국회의 특정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 해 청원경찰들의 친목단체인 청목회의 후원금으로 파문이 일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봉○○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1만 4천여 개 주유소가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주유소협회. 2년 전, 이 협회 공금 통장에서 수천 만 원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협회 관계자] 출금 전표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어디다 썼냐 그랬더니...

[기자] 협회 간부에 따르면 문제의 돈은 협회 계좌에서 전국 시도 지회 계좌로 이체된 뒤 각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원에게 전달됐습니다. 회원들은 협회의 돈을 자신의 명의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납부했다는 겁니다. 협회 간부들은 특정 상임위를 겨냥한 이같은 로비를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었습니다.

[협회 관계자] 협회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무국 국장급 정도 돼서는요.

[기자] 협회가 조직적으로 국회의원 후원에 나선 것은 주유소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서입니다.

[협회 관계자] 회장단 회의 석상에서 국회의원한테 줬다. 그때는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밖으로 새면 골치아플 수가 있으니까. 카드수수료 인하 로비자금으로 줬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기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게재되고 회원들 간에 논쟁도 벌어집니다. 협회 공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후원금을 은폐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올해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고 이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JTBC 「뉴스 10」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별지] 1. 제목 : ‘협회 내부자 고발’ 관련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2. 내용: 본 방송은 지난 12월 26일 JTBC 뉴스프로 프로그램에서 “협회 내부자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협회 관계자’라는 자막과 함께 ‘협회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무국 국장급 정도 돼서요.’라는 멘트를 방송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당사자와 확인결과 ‘내부 고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 처리결과: 기각

〈결정내용〉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1년 12월 26일자 JTBC 「뉴스10」 프로그램 [주유소협회, 불법후원금] 제목으로 주유소협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후원금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진술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은 불법 후원금과 관련하여 내부 고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을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보도에서 신청인의 성명 또는 직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또한 보도의 변조된 음성만으로는 신청인의 음성인지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내용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 법률 조항에 의한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보도에서 피해자로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보도에서 신청인의 성명 또는 직책이 직접 언급된 바가 없고, 또한 피신청인의 방송 보도에 사용된 변조 음성만으로는 그것이 신청인의 음성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한 그 밖의 자료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변조 음성인 신청인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신청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과 관련한 보도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2012서울조정46 손배청구
신청인: 김○○
피신청인: (주)아시아경제신문사
중재부: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2012. 1. 11.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50만원)

■ 사건개요

신청인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과 관련한 보도에서 자신의 초상이 동의없이 게재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소속기자가 신청인에게 사과 및 유감을 표시하는 서신(이메일)을 발송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아시아경제닷컴 : 「포토」 전세구해야 하는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내용: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신청일인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한 대학생이 생각에 잠겨 있다.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서울 3300가구, 경기 2000가구 등 전국 1만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50만원)

〈결정내용〉

1. 피신청인은 이 결정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 소속기자 양○○으로 하여금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초상권이 침해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메일로 진심어린 사과 및 유감을 표시하는 메일을 발송한다.

해외 자원봉사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2012서울조정166·167, 168·169(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안○○
피신청인: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중재부: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2012. 2. 3.
처리결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및 150만원)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대학생들의 해외 자원봉사가 진학,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용이 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기사와 무관한 자신의 사진이 게재됨으로써, 자

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이 반영된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1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1) **조선일보** : 「취업 스펙 쌓기 ‘필수과목’ 돼버린 해외 봉사」 제하의 기사(2012년 1월 26일자 11면)

내 용 : 경북 지역 모 대학교 3학년 김모(여·22)씨는 지난 3일 출국, 몽골에서 2개월간 취학 전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몽골에서 하루 3시간 강의를 하고 남는 시간은 수도 올란바토르 시내 관광을 하거나 인근 관광지를 둘러보는 중이다. 2개월간 체류 비용으로 150만원 정도를 부담했고, 항공편 비용은 봉사 활동을 주관한 단체에서 지원 받았다.

김씨는 “솔직히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에 적으려고 봉사 활동을 왔는데 ‘가장 힘들었던 일’ 항목에 적기엔 좀 약한 것 같아 네팔 히말라야 등반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사립대 경영학과 4학년 정모(23)씨는 지난해 여름 베트남으로 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10여일간 국립공원에서 나무를 심고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했지만, 봉사 활동보다 여행이 목적이었다. 정씨는 “단순히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취업할 때 그 기간에 놀았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는데 부담 없는 봉사 여행이 있어 따라나섰다”고 말했다. 오전에 봉사 활동을 한 뒤 주로 관광을 했기 때문에 여행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07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도 스펙(어학 실력이나 해외 경험 등의 개인 경력)을 쌓기 위해 인도 캘커타로 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그는 “해외 봉사 활동을 다녀오면 대학 수시 전형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가했다”며 “120여만원을 들여 일주일간 다녀왔는데 오후엔

주변 관광을 하는 일정이라 별로 힘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겨울방학 동안 진행되는 대학생들의 단기 해외 봉사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저개발국 지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라거나, 심지어 최저가 해외여행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해외 봉사 활동을 나서는 대학생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따르면 지난 1997년 131명에 불과했던 대학생 봉사단은 2008년 2000명을 돌파했다.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도 2009년부터 해외 봉사 활동 참가 경쟁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3대 1에서 2010년 5대 1, 2012년 7대 1을 기록했다.

봉사 단체 관계자들도 실속 없이 참가자 숫자만 늘어난다는 지적을 한다. 한 국제 구호 단체 관계자는 “해외 봉사에 참여하는 대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인류애나 봉사 정신보다 개인적인 경력, 해외여행 기회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다”면서 “봉사단을 맞이하는 현지 사람들도 이런 점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봉사 활동 참가 비용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는 대학생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건국대 사회과학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김모(여·21)씨는 “평일엔 주 2회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엔 종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댄다”면서 “방학 때 기업체 인턴도 못 하는 처지인데, 스펙을 쌓겠다고 해외 봉사 활동에 몰려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허탈해진다”고 말했다.

김○○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봉사 활동 횟수가 아니라 봉사 정신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해외 봉사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 **조선닷컴** : 「취업 스펙 쌓기 ‘필수과목’ 돼버린 해외 봉사」 제하의 기사(2012년 1월 26일자)

내 용 : <2012서울조정166·167, 168·169(병합)

의 조정대상보도(1) 참조)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1.은 조선일보의 사회면에 [별지1]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취업 스펙 쌓기 ‘필수과목’ 돼버린 해외 봉사”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별지1] 1. 제목 : ‘스펙 쌓기용 해외 봉사’ 보도사진, 기사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2.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26일자 사회면에 “취업 스펙 쌓기 ‘필수과목’ 돼버린 해외 봉사”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이 이력서, 해외여행, 수시전형을 목적으로 해외봉사에 나선다는 기사에 해외 봉사를 다녀온 한 학생의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해당 학생은 이 기사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사용으로 인한 해당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인물과 기사 내용이 무관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2.는 조선닷컴(<http://news.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2]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2]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별지2] 1. 제목 : ‘스펙 쌓기용 해외 봉사’ 보도사진, 기사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2. 내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26일자 사회면

에 “취업 스펙 쌓기 ‘필수과목’ 돼버린 해외 봉사”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이 이력서, 해외여행, 수시전형을 목적으로 해외 봉사에 나선다는 기사에 해외봉사를 다녀온 한 학생의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해당 학생은 이 기사내용과는 무관한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사용으로 인한 해당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인물과 기사 내용이 무관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신청인 안○○에게, 피신청인1.은 일금 5,000,000원을 피신청인2.는 일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보도 및 150만원)

〈합의내용〉

1. 보도문

가. 제목 : ‘취업 스펙 쌓기 해외 봉사’ 사진 관련 정정보도

나. 내용 : 본지 1월 26일자 A11면 “취업 스펙 쌓기 ‘필수과목’ 돼버린 해외 봉사” 제목의 기사에서 해외 봉사 활동중인 학생의 보도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주)조선일보사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제1항의 정정보도문을 <조선일보> A2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2012. 2. 22.자 A2면 “후진타오 주석님, 붙잡힌 친구를 살려주세요” 활자와 같은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 (주)조선일보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도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 (주)조선일보사와 (주)디지털조선일보

는 신청인에게 2012년 3월 7일까지 150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보도 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의 과거 사진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2012서울조정252 손배청구
 신청인: 김○○
 피신청인: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tvN)
 중재부: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2012. 2. 28.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00만원)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낮에는 쇼핑몰과 의류 피팅모델을 직업으로 하지만, 밤에는 퍼포먼스 그룹 멤버로 활동하는 한 여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는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과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허락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tvN : 「화성인 X-파일」 프로그램 '얼음킬러녀 VS 이중생활녀'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9일 24:00)

내용 : [남자성우] 이제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체를 밝혀라.

[여자출연자1] 바이트걸은 간단히 말하면 섹시피포

먼스 팀점 파티플래너 팀인데요.

(동시에 보도화면에는 4장의 사진이 게재됨)

[여자피디] 커스텀 종류는 어떤 걸 하셨어요?

[여자출연자2] 바니걸 경찰 갯우먼

(동시에 보도화면에는 5장의 사진이 게재됨)

[남자성우] 다양한 커스텀을 한 화성인.

[여자출연자] 조금 아하게 했던 거는.. 코르셋.

(동시에 보도화면에는 사진 1장이 점점 확대되어 게재됨)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00만원)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내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름, 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 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판례 1]

특정 종교에 대해 비판하면서 무단으로 종교 활동중인 어린이들의 합창장면이 담긴 영상을 자료로 사용한 경우, 어린이들에 대한 모욕 및 사생활·초상권·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가. 원고들이 믿는 종교에 대하여 사이버종교나 이단이라는 취지로 방송한 것은 원고들의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종교비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이단이나 사이버종교라는 표현은 타종교에 대한 경멸의 감정 표현 내지 평가적 의견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도 없다),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탁OO이 ‘진짜와 가짜’, ‘사이비 종교’ 등의 발언이 포함된 강의를 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사용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원고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도 탁OO의 위

와 같은 모욕행위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탁OO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신앙활동이 담긴 동영상 무단으로 사용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여 원고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원고들의 합창장면이 담긴 이 사건 동영상을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음성을 그대로 방송하였는바, 원고들의 음성이 방송된 부분이 비록 짧고 합창으로서 개개인의 음성이 잘 구별되지 아니하나 원고들의 얼굴과 함께 방송됨으로써 원고들의 음성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방송 전체의 내용이 원고들을 모욕하거나 원고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음성을

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것은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사 건 : 2010나12103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정OO 외 8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기독교텔레비전

제1심판결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 11. 4. 선고

2010가합1018 판결

판결선고 : 2011. 11. 4.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6.부터 2010.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1) 원고들에게 각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고, 2) 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CTS방송 '4인 4색'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 통상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당시 해당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탁OO으로 하여금 위 기재 내용을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본방송 1회, 재방송 2회를 각 방송하며, 3)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위 2)항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동영상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 에 문제의 방송물이 게재된 날로부터 삭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한 위치, 동일한 활자 및 모양으로 각 게재하라.

나. 만일 피고가 1) 위 가의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무이행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2) 위 가의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무이행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만 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사과와 차후 동일한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사과편지를 작성해서 발송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미성년자들로써 1998년경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린이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는 신도들이고, 피고는 기독교 관련 방송사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1) 원고들은 1999년~2000년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 어린이 합창단원으로서 다른 어린이 신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및 교주를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며, 무용을 하는 영상물을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2) 이 사건 동영상은 2004년경부터 분당 소재 하나님의 교회 부설 셋별선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3) 피고는 2006. 12. 26.경 '4인 4색'이라는 방송에서 탁OO을 강사로 하여 이단(탁OO은 '사이비 종교'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다)에 관한 "탁OO 소장의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 방송하였다.

4) 탁OO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이 다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고, 이단의 초등학생들에 대한 포교활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의하면서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요, 교주를 찬양하는 그런 영상 노래를 저희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교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많이 힘들고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등의 발언을 하고, 원고들의 얼굴이 나오는 이 사건 동영상을 청중들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피고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탁OO의 강의 화면 우측 하단에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합창단 어린이들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는 2006. 12. 27.과 같은 달 28.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한편, 피고의 홈페이지의 동영

상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디오 및 DVD로도 제작, 판매하였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 후의 정황

1) 일부 원고들의 어머니들인 윤OO, 이OO, 김OO은 2007. 1.경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중지 및 비디오와 DVD 판매금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중지, 사과방송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7. 1. 22.경 이들에게 '당사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문제와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였고, 2007. 1. 29.경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와 비디오 및 DVD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1) 탁OO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던 중 원고들의 얼굴이 포함된 이 사건 동영상을 이용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발언을 하고, 또 2007. 4. 17. 및 같은 달 18. 명지대학교에서 이단에 관한 강의를 하던 중 이 사건 동영상을 상영한 행위 등에 대하여 2007.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07고약21176).

2) 탁OO은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07고정347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4. 탁OO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종교적 비판의 행위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635호)은 탁OO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들을 포함한 합창단 어린이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가 없고, 종교비판의 한 형태로 허용된다는 이유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인 탁OO이 쓴 ‘진짜와 가짜’, ‘사이비 종교’, ‘북한의 아이들’ 과 같은 표현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합창단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4) 검사 및 탁OO이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8도9209호)은 2010. 10. 14.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 상을 이용하여 원고들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고, 원고들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음성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종교 및 신앙의 자유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1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가)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점

(1) 명예훼손 여부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져야 하므로,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탁OO이 강의를 하면서

‘원고들이 교주를 찬양하며 노래를 부른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들이 그들이 믿는 교주를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발언이 사회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동영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발언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 것 역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방송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이 믿는 종교에 대하여 사이비종교나 이단이라는 취지로 방송한 것은 원고들의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의 종교 및 신앙의 자유 침해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정당한 종교비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이단이나 사이비종교라는 표현은 타종교에 대한 경멸의 감정 표현 내지 평가적 의견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도 없다),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모욕의 점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탁OO이 ‘진짜와 가짜’, ‘사이비 종교’ 등의 발언이 포함된 강의를 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사용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원고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도 탁OO의 위와 같은 모욕행위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탁OO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초상권 침해의 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 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한편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여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점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

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신앙활동이 담긴 동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여 원고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음성권 침해의 점

초상권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의 음성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재생·방송·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고(초상권 침해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 참조), 타인의 음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녹음하여 공중에게 공표하거나, 공표에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한 경우 이는 타인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합창장면이 담긴 이 사건 동영상을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음성을 그대로 방송하였는바, 원고들의 음성이 방송된 부분이 비록 짧고, 합창으로서 개개인의 음성이 잘 구별되지는 아니하나, 원고들의 얼굴과 함께 방송됨으로써 원고들의 음성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방송 전체의 내용이 원고들을 모욕하거나, 원고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음성을 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것은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종교와 신앙의 자유 침해의 점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믿는 종교를 비판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사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원고들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

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원고들 소속의 교회가 이단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탁OO이 강의에서 이단의 초등학생들에 대한 포교활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얼굴이 나오는 이 시간 동영상을 방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탁OO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이비종교’로 지칭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 사회적 해악을 적시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한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위 교회를 ‘이단’으로 지칭한 부분은 기독교에서의 이단의 통상적인 의미가 교회, 즉 특정 교단의 권위에 의하여 배척된 교리나 체제임을 뜻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는 이미 기성교단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기성교단 소속원들에 대한 평가의 저하를 의미할지언정 그 자체 그릇된 것이라는 뜻이라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정통과 이단의 구별기준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은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인 선교의 자유의 한 발현형태로서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단이나 사이비종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법성 조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단의 폐해에 대한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스스로 인터넷에 게시한 동영상을 잠시 이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 스스로 이 사건 동영상의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개인적인 법익 침해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단의 폐해에 대한 문제제기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공익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피고의 언론의 자유와 원고들의 개인적인 법

익 침해가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는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이단의 폐해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공익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중에 반드시 어린이 들인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인 종교활동 동영상을 포함시켜 원고들의 초상이나 음성을 공개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침해행위의 보충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얼굴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음성을 소거하거나, 자막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원고들의 법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피고가 사용하는 데 동의한 바가 없는 점(원고들이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에 이 사건 동영상이 올려져 있었다고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이 원고들에게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된 방송에 이를 사용할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시점이 2006. 12. 26., 같은 달 27., 같은 달 28. 인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9.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일로부터 3년 전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음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및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원고들의 위 법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 탁OO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의 가담 정도, 종교방송사로서의 피고의 영향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각 원고들에게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를 400만 원으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400만 원으로,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합계금 각 1,000만 원(= 400만 원 + 4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6. 1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시 판결 선고일인 2011.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정정보도 청구 및 사과편지 발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동영상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으로 정정보도 청구 및 그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와 사과 편지 발송을 구하나, 이는 피고의 명예훼손에 기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양철한

판사 문병찬

[별지]

정 정보도문

제목: 알려드립니다.

내용: 본 방송은 지난 2006. 12. 26. '4인 4색' 프로그램에서 '탁OO 소장의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 제하의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회 어린이 합창단 아동들의 영상물을 동의 없이 가져다가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등 아무 장치도 없이 피해 아동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노출시켜 방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서 피해 아동들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동영상을 30초간 보여주며 "4살짜리, 5살짜리 꼬맹이 아이들이 교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많이 힘들고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 아동들이 마치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하고 부적절한 멘트를 여과 없이 방송하여 해당 아동들에게 심적·정신적 고통을 끼친 것으로 밝혀져, 해당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방송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리고 이를 바로잡아 정정하며, 하나님의 교회 어린이 합창단 아동들과 부모님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끝.

[판례 2]

신문 사설은 풍자·과장 등 다양한 표현방법이 사용 가능하나, 그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이라면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판결요지〉

가. 사설 중 원고에 대하여 “...노무현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노무현 사람’이다.(중략)”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의 정치적 입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결부시킨 것으로 원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피고의 평가적 의견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성폭행적 폭언’,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한 피고의 주관적인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나. 통상 신문의 사설은 사실의 보도를 위주로 하는 기사와 달리 신문사의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속성이 있는바, 신문사가 신문의 사설에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냄에 있어서는 풍자, 과장 등 다양한 표현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한 표현을 쉽사리 위법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든가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또는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공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설의 제목 및 본문에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수회 사용된 점,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발언에서 언론인 내지 피고 사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비하여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된 표현은 더욱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점, 이 사건 사설은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서 피고 사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는 것

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이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공직자를 비판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인의 정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모욕행위는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사 건 : 2011나36512 손해배상(기) 등
원고, 항소인 : 김상희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09가합68328 판결
판결선고 : 2012. 1.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2012.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이 판결 확정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지 '조선일보' A35면 상단 부분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정정보도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며, ③ 만약 위 ②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제1심 판결의 정정보도부분을 취소하고, 청구 취지 제②, ③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제18대 국회의원으로 2008. 7. 1.경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여성위원회 간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일간지 '조선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이다.

나. 여성부장관이 2009. 4. 14. 개최된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현안으로 성매매 관련 사건을 보고하면서 술시중과 성상남

의 강요 등을 이유로 자살한 배우 장자연의 유족이 관련자들을 성매매특별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하 '장자연 사건'이라 한다),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경찰청장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여성부장관에게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 중에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장자연 사건에 피고의 사주(社主)가 관련된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면서, 언론사는 상당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방지 교육을 언론사 등에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별지 2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다음날인 2009. 4. 15. '조선일보' A35면의 오피니언란에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별지 3 기재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언론을 향하여 '성폭행적 폭언'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원고에 대하여, "...노무현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노무현 사람'이다.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이 나온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또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성폭행적 폭언'이고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별

지 1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의 이 사건 보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실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성폭행적 폭언' 이고 '언론인들 얼굴에 모욕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원고가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 는 등으로 인신공격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였고, 또 이 사건 사실 중 원고에 대하여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 라고 전제한 다음 다른 사람이 원고의 남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하여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이 몇 명인지를 묻고, 성매매 방지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고 한 부분, 원고의 경력을 열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사람' 이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원고를 모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진술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해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인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당해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표현이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또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 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사실 중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 이라고 원고가 발언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정확하게 위와 같은 표현의 발언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실 게재 전날 개최된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 중에서 언론인이 몇 명인지를 묻고, 피고의 사주가 장자연 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함으로써 '성매매를 하는 사람 중에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사실에서 원고가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 이라고 발언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실 중 원고에 대하여 "...노무현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노무현 사람' 이다.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 이라는 폭언이 나온 것이다" 라고 표현한 부분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 이라는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본다)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의 정치적 입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결부시킨 것으로 원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피고의 평가적 의견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성폭행적 폭언’,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한 피고의 주관적인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민법 제 764조에 따라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역시 이유 없다.

2) 모욕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실의 제목에서 원고가 언론을 상대로 ‘성폭행적 폭언’을 하였다고 표현하고, 본문의 내용에서도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 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피고가 언론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비판적 시각에서 이 사

건 사실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인 것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모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사실에서 원고가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한 다음 원고의 남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이 몇 명인지를 묻고 그 직업에 대해 성매매 방지 교육을 시키라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겠느냐고 한 부분 및 피고가 원고의 경력을 열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사람’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은 그 표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존재이고, 이 사건 사실은 원고의 국회에서의 공적인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인바, 신문 사실은 사실을 알리는 기사와는 다르게 비판, 풍자, 과장된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며, 이 사건 사실은 원고가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하여 언론인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반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실은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함하거나 원고에게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

니 되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공직자에 대한 모욕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는 언론인의 성매매에 대하여 질의하고, 언론인에게도 성매매 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 이른바 장자연 사건에 피고 사주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사실의 게재는 공직자인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나타난 언론관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통상 신문의 사실은 사실의 보도를 위주로 하는 기사와 달리 신문사의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속성이 있는바, 신문사가 신문의 사실에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냄에 있어서는 풍자, 과장 등 다양한 표현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실에서 사용한 표현을 쉽사리 위법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사실에서 사용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든가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또는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공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실의 제목 및 본문에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수회 사용된 점,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발언에서 언론인

내지 피고 사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비하여 이 사건 사실에서 사용된 표현은 더욱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점, 이 사건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서 피고 사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이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공직자를 비판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인의 정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모욕행위는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액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의 진행경과, 원고의 공직자 및 개인으로서의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의 표현행위의 수위 및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모욕행위에 따른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09.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

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양철한
판사 문병찬

[별지 1, 2 생략]

[별지 3]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부장관에게 “지난번 성매매 단속된 사람 중에서 언론인이 몇명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거론하면서 장관에게 “현재 성매매 방지와 관련한 교육은 공무원에게만 강제하고 있는데 언론사에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여성부에서 언론기관도 성매매 예방 교육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해보라”고도 했다.

국회의원이라고 특정 직업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김 의원이 만일 “의사들이 몇명이나 성매매하다 걸렸는가” “소방관들을 성교육 시켜라” “택시기사들의 성매매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가정해보라. 김 의원의 전화는 항의로 마비되고 김 의원의 집앞과 국회 사무실은 의사, 소방관, 택시기사들의 항의 시위로 넘쳐났을 것이다.

김 의원이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 만일 김 의원에게 남편이 있는데 어느 국회의원인가 김 의원 남편 직업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이 몇명이냐를 묻고, 그 직업에

대해 성매매 방지 교육을 시키라는 식으로 모욕을 줬다고 해보자. 김 의원과 김 의원의 자녀들이 그 국회의원에게 무슨 생각을 갖게 되겠는가. 언론인의 배우자, 언론인의 자녀들이 김 의원 발언으로 입게 될 마음의 상처를 만분의 1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언어 폭행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 의원 이력서에는 여성운동 경력이 길게 나열돼 있다. 여성운동가 김상희씨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2003년 4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 위원, 그해 6월엔 정연주씨가 사장으로 있던 KBS의 이사에 임명됐다. 그러더니 2006년 1월엔 장관급인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직(垂直) 출세를 했고, 위원장 임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이 간판을 바꿔 단 대통합민주신당의 최고위원직에 올랐다. 말하자면 김 의원은 노무현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노무현 사람’이다.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暴言)이 나온 것이다. “기자들에게 소주 사줘야 득될 게 없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실한 상품이 미디어”라는 식으로 5년 내내 언론을 폭행하던 ‘노무현 대통령 사람’ 답다. 김 의원은 무명(無名)의 자신을 출지에 장관급 자리까지 발탁해주었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지금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져대고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은 김 의원 처럼 누가 성 상납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식의 모략성 흑색(黑色)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 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을 허용해주는 특권이 아니다. 김 의원은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

외국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 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일본판례]

공인의 비리를 보도하면서 언론사가 객관적인 입증 노력없이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했다면,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원고는 요코하마 전 시장으로서 국민은 원고의 자질이나 적성 등을 판단할 때 사생활까지도 포함하여 그 활동이나 발언 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각 기사는 정치가인 원고의 행적이나 발언, 요코하마시장 재직 당시 원고에 의한 공금의 취급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본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은 모두가 공공의 이해에 관련한 사실인 동시에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비록 기자가 피해자에 대한 직접취재를 통해 그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진술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취재에 응하기까지의 경위에는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보이고, 피해자를 기자에게 소개해 준 다른 취재원들 또한 원고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반 시장파의 정치인이므로 이와 같이 입수된 정보나 소개받은 취재원에 근거한 정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하게 그 신빙성을 음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강취재 등 객관적인 입증노력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기자가 주요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원 고 : 고노타로(甲野太郎)

피 고 : 주식회사고단샤(講談社)

대상사건 : 도쿄지법 2008(ワ) 제31252호

사 건 명 : 손해배상등 청구사건

연월일등 : 2010. 10. 29. 민사제25부판결

재판내용 : 일부 인용 · 항소

참조조문 : 민법 709조 · 710조 · 723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만엔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죄광고를 피고가 발행하는 주간지「주간현대(週刊現代)」에 1회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0등분하여, 그 9를 원고의 부담으로,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해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사실의 개요

본건은 피고가 발행하는 주간지 주간현대의 2007년 11월 10일호, 11월 17일호 및 12월 1일호에 게재된 각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들 각 기사의 집필, 편집, 게재를 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해 입은 손해 5,000만엔과 변호사 비용 상당액 500만엔을 합쳐 총 5,500만엔의 지불 및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하는 사안이다.

가. 다툼이 없는 사실 등(증거 등을 제시한 부분 이외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1) 당사자 등

(가) 원고는 2002년 4월 요코하마 시장에 당선되어 2007년 당시 시장직에 있던 자로 현재는 퇴임하였다.

(나) 피고는 잡지 및 서적의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며 「주간현대」를 발행하고 있다.

(다) 하루나 아키오(春名昭男·이하 「하루나」로 한다)는 교도(共同)통신사 기자출신으로 2007년 당시 프리저널리스트로서 「주간현대」에 기고를 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주간현대 2007년 11월 10일호 표지에 「음란 미팅 고노타로 시장, 동료 시의원에게 협박」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동 제목의 기사를 게재(이하 「본건 제1기사」로 한다)하였다. 본건 제1기사는 「제물이 된 간호학교생들.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을 날날이 파헤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기사 2페이지의 상단 3분의 1에는 원고가 소파에 앉아 4명의 여성에게 좌우로 둘러싸여 V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하 「본건 게재사진」)을 게재하였다. 기사 전반부분에는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의 발언형식으로 「고노 시장은 여염집 여성들과 만나는 자리를 주선해 주도록 마스크 관계자나 지원자들에게 집요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미팅을 너무 좋아하는」 병이지요.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여성에게 난폭한 행위를 저지르는 일까지도 있다고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한 고노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행위를 당했다는 전간 호학교 여성(이하 「피해여성A」로 한다)의 발언형식으로 당해 미팅(이하 「본건 미팅」으로 한다)은 요코하마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저녁 6시~7시경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미팅 중 키스를 강요당하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기사 후반부분에는 요코하마 K시의원의 증언을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렴치한 고노 시장의 난행을 듣고 그에게 주의를 주었다. 2007년 3월 원고가 사무실로 찾아와 무서운 표정으로 「일부러 항간에서 떠도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자세라면 선거를 응원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얼마 후에는 고노 시장의 지인인 오토야마 사다오(乙山貞夫·이하 「오토야마」로 한다)로부터 「고노 시장을 모욕한데 대해 사죄하고 앞으로는 여성 관계에 대해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쓰도록 협박을 받았다」

(3) 피고는 주간현대 2007년 11월 17일호 표지에 「“음란미팅 요코하마시장” 고노타로 파렴치 추궁 제2탄!」이란 제목을 게재하고, 「파렴치 철저 추궁 제2탄 “음란미팅 요코하마시장” 43세의 고노. 공금횡령의혹, 검은 인맥」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본건 제2기사」로 한다)를 게재하였다. 본건 제2기사는 “깨끗한 이미지로 알려진 요코하마시장과 그의 최대의 지원자인 요코하마시의 거물실업가의 ‘심상치 않은 관계’를 본지가 포착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2페이지 중앙에는 지면의 반 이상 크기로 본건 게재사진이 게재되었으며, 사진 왼쪽 위에는 「간호학생미팅」을 즐기는 고노시장이라는 설명을 표시했다. 기사의 전반부분에는 피해여성A의 발언내용을, 후반부분에는 “2006년도 요코하마시 포괄외부감사보고서(이하 「본건 보고서」로 한다)에서 감사인이 요코하마항의 국제여행센터미널 관리업무(이하 「관리업무」로 한다)에 대해 ‘부적절’이라고 판단했으며, 정도를 넘은 횡령이라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또한 「본건 보고서에 의하면 관리업무는 요코하마시 항만국으로부터 사단

법인 요코하마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로 한다)에 위탁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진흥협회가 항만국에서 수탁한 업무를 민간의 S사에 재위탁하여 약 4,700만엔이라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보도하였다. 본건 제2기사에는 「관리업무를 둘러싼 돈의 흐름」이라는 도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도표는 진흥협회와 진흥협회 A 부회장이 약 4,700만엔을 횡령하고 정치자금 행사를 개최하여 원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요코하마시가 진흥협회에 지불한 관리업무위탁비가 A 부회장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마치 원고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4) 피고는 표지에 「음란시장 추궁 제3탄!, 고노타로는 해외공무를 소홀히 하고 카바레식 클럽에서 ‘호스티스 접촉」이라고 게재하고 동일한 내용의 제목을 붙인 기사(이하 「본건 제3기사」로 하며, 본건 제1기사 및 본건 제2기사와 합쳐 「본건 각 기사」로 한다)를 게재한 주간현대 2010년 12월 1일호를 발행하였다. 본건 제3기사는 “고노시장의 음란한 미팅, 공금횡령의혹에 이어 공무방기 사실을 적발했다. 인기보컬·댄스 그룹인 EXILE의 멤버와 함께 록본기(六本木)의 클럽(이하 「본건 클럽」으로 한다)에서 몹시 취한 그는 여성의 허벅지를 어루만지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했다. 더구나 그 날은 엄밀하게 말하면 해외시찰로 미국에 가 있어야 할 처지였다”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본건 제3기사에는 「마지막 순간의 취소로 4일간의 기념사업 망쳐」라는 소제목 아래, 원고가 2007년 10월 25일 심야에 본건 클럽에 EXILE의 멤버와 함께 약 4시간에 걸쳐 1인당 1시간에 25,000엔의 최고급 룸에서 음란한 소동을 벌인 사실, 원고는 원래 이날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미국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3개 도시에 출장을 가기로 결정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샌디에고 방문은 중요한 행사였다는 사실, 원고측은 출장 직전인 동월 24일 갑자기 해외시찰을 연기하면서 그 이유로 ‘샌디에고는 큰 산불로 자매도시제후 50주년 기념 일정을 단념했다’고 발표한 사실 등이 게재되는데 이어,

전 자민당 요코하마 L시의원의 발언형식으로 “고노 시장은 갑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했지만 시의원들을 포함한 약 80명의 교류단은 전원 샌디에고의 기념식에 참가했으며, 화재를 이유로 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게재하였다.

(5) 본건 각 기사는 피고인 주간현대 편집부(이하 「피고편집부」로 한다)의 편집자 나츠메 가즈오(夏目和男·이하 「나츠메」로 한다) 및 아키토 마사오(秋本正男·이하 「아키토」로 한다)가 취재 및 편집을 담당했다.

나. 쟁점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1) 본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가

원고는 본건 각 기사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있으며 또한 원고의 명예감정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본건 각 기사의 주요한 적시사실 및 의견의 기술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나, 원고의 명예감정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서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감정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본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본건 각 기사의 게재 등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

피고는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공직의 지위에 있었고 본건 각 기사는 원고의 공적·사적인 생활태도, 행실에 관한 것으로 본건 제1기사 및 본건 제2기사의 전반부분의 적시사실은 공소제기에 이르기 전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모두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되는 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피고편집부는 지금까지 깨끗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어필해온 원고가 실제로는 그러한 이미지를 뒤엎는 행실을 해왔다는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전해주고 원고에게는 쇄신과 자각을 촉구할 목적으로 본건 각 기사를 집필, 편집, 게재한 것이며 그 발행목적은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본건 각 기사의 기재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라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피고는 오로지 화제성만을 이유로 본건 각 기사의 집필, 편집, 게재를 한데 지나지 않으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본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은 진실인가, 또는 피고에게는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가) 피고의 주장

본건 각 기사의 주요한 전달사항 및 의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피고편집부가 충실한 취재활동에 의해 알아낸 사실이며, 모두가 진실이다. 가령 진실이라는 입증에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 편집부는 충실한 취재활동을 하고 있으며 취재에도 실수가 없었고 피고에게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는데 충분하고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1) 본건 제1기사 및 본건 제2기사의 전반부분에 대하여

아키토모 및 피고편집부 소속의 기자인 후유키 아키오(冬木明男·이하「후유키」로 한다)는 2007년 9월 이후 복수의 요코하마 시의원을 통한 취재에서 원고가 미팅에 몰입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년 10월 상순에는 M요코하마 시의원에게 상기 정보에 관한 취재를 했다. 동월 17일에는 M시의원, K시의원 및 N시의원을 상대로 취재를 했는데 그 때 K시의원으로부터 동인이 원고에게 미팅에서의 문제행동에 대해 주의를 했다가 거꾸로 원고가 협박을 하면서 뜻에 반하는 서약서를 쓰게 하는 등 본건 제1기사의 후반부분에 기재되어있는 내용과 같은 강요행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때 피고편집부는 K시의원으로부터 서약서의 사진과 협박당하는 모습을 녹음한 내용을 제출받았다. 또한 아키토모 및 후유키는 동월 18일부터 19일에 걸쳐 K시의원 및 N시의원 동석 하에 피해

여성A에 대해 5시간에 걸쳐 직접 취재를 했는데, 피해 여성A의 진술태도는 진지했고 막힘없이 합리적이었으며 직접 체험한 자만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다. 또한 진술내용도 극히 상세했으며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었다.

2) 본건 제2기사의 후반부분에 관하여

하루나는 2007년 3월 상순경 대형언론사의 간부로 부터 본건 보고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이를 근거로 복수의 요코하마 시의원을 취재하여 본건 보고서를 입수했으며,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온 항만시설 등을 현지취재했다. 하루나는 진흥협회 A부회장이 원고의 유력한 후원자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피고편집부가 공동으로 취재를 하게 되었다. 하루나는 2007년 9월 하순부터 10월에 걸쳐 M시의원, O시의원, L 전 시의원 등 외에도 현직 요코하마시 직원, 직원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다. 하루나는 가나가와 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고의 정치자금수수보고서를 입수하여 A부회장이 원고에게 거액의 기부를 하고 있는 한 정치단체의 중심인물임을 확인하고, 2007년 10월 하순에는 본건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했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다. 후유키는 같은 시기 A부회장에 대해 직접 취재를 했다. 더욱이 본건 보고서에는 본건 제2기사에 기재된 「재하청」, 「거액수익」, 「가로채다」 등의 기재는 없으나 동 보고서에 기재된 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표현은 진실을 전제로 한 공정한 논평이다.

3) 본건 제3기사

피고편집부는 2007년 11월초 원고가 동년 10월 25일 밤에 본건 클럽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본건 클럽을 방문하여 원고를 접대한 여러 여성종업원을 직접 취재했다. 취재반은 예정대로 샌디에고의 기념식 전 등에 참석한 L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다. 더욱이 원고가 공무원인 샌디에고 시찰에 집중하지 않고 본건 클럽에서 호화롭게 놀고 있었음이 진실이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본건 제3기사에서 원고가 요코하마시장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의견을 표

명한 것은 공정한 논평이다.

(나) 원고의 주장

본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은 모두 진실이 아니며, 본건 각 기사의 원인인 주된 취재원은 M시의원을 위시하여 모두가 요코하마 시의회에서 원고와 대립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로 그 신빙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객관적인 입증취재나 반대취재도 하지 않은 채, 화제성만을 이유로 본건 각 기사의 집필, 편집, 게재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적시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

1) 본건 제1기사에 관하여

본건 제1기사에 관련한 취재대상은 익명의 피해여성A 등으로 익명으로 그 실제 자체도 의심스럽고 구체적인 취재내용도 명확하지 않다. 명확한 것은 취재원이 모두 원고와 대립관계에 있는 요코하마 시의원 등이라는 사실이며, 이러한 입장에 있는 자의 취재결과가 신빙성에서 부족함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장에 함께 있던 자에 대한 취재나 원고에 대한 반대취재 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본건 게재사진은 차를 마시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촬영된 것이며 미팅의 상황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본건 제2기사에 관하여

본건 보고서는 항만국에 의한 발주금액 총합계과정의 미비점에 대하여 설계서의 작성·점검을 요구한 것이며 본건 제2기사에 있는 것과 같은 「재하청」, 「거액수익」, 「4,700만엔을 가로채다」 등을 지적한 기재는 없으며 이 감사보고를 받고 2007년 9월 26일까지 발주금액 총합계과정의 미비점은 개선되었으며, 4,700만엔의 재위탁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도 항만국의 조사에서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모두 관리업무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원고를 후원하는 정치단체는 요코하마 시내 각 계각층의 유지들로 결성된 모임이며, A부회장은 모임이 결성될 때 일을 거든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3) 본건 제3기사에 관하여

원고가 본건 클럽에 갔던 사실은 인정하나 놀기 위한 것이 아니며, EXILE과의 만남은 샌디에고 해외시찰이 중지 결정된 이후이며 이 일로 해외시찰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또한 L 전 시의원은 시장선거 등에서 기본적으로 원고와 대립하는 입장에 있어 그의 증언은 원고가 이유 없이 공무를 소홀히 했다는 입증이 될 수 없다. 게다가 피고는 요코하마시 담당직원, 로스 앤젤레스 일본 총영사관, 샌디에고시의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거의 취재를 하지 않았다.

2. 법원의 판단(다툼이 없는 사실, 증거로 제시된 사실을 전제로 한다)

가. 본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에 대하여

(1) 본건 미팅기사에 관하여

본건 미팅기사는 제목이나 기사에서 ‘간호학생이 희생물’, ‘음란미팅 요코하마시장’, ‘파렴치’ 등의 문언과 본건 게재사진이 게재되는 등 그 소재목의 표현이나 피해여성A의 발언내용 기재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가 수년전에 참가했던 미팅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잡지의 기사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의 통상적인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당해 기사의 의미내용을 해석하여 그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인바(최고재판소 1956년 7월 20일 제2소법정 판결), 당시 원고가 요코하마 시장이라는 공직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본건 미팅기사의 적시사실이 원고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2) 본건 협박기사에 관하여

본건 협박기사에서는 ‘고노씨가 무서운 표정으로 협박’, ‘서약서를 쓰라고 협박당했다’, ‘격한 어조로 몰아세우는 모습’ 등의 문언이 사용되고 있으며 C의

원의 발언내용의 기재와 어울려서, 원고가 본건 미팅을 포함한 파렴치한 난행(亂行)에 대해 주의를 준 C의 원을 협박하여 다시는 원고의 여성관계에 대해 입을 올리지 않도록 서약서의 작성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일반 독자의 통상적인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할 때 본건 협박기사는 원고가 그의 부적절한 행위를 충고한 자에 대해 협박 내지 강요로 평가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일반 독자에게 준 것이며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본건 공금횡령기사에 관하여

본건 공금횡령기사에서는 큰 제목이나 소제목 등에 ‘공금횡령의혹’, ‘재하청’, ‘도를 넘는 횡령’ 등의 문언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도표나 기사내용을 볼 때, 원고의 유력한 지원자인 A부회장이 실권을 잡고 있는 단체가 요코하마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재하청하여 요코하마시로부터 받은 업무위탁비의 절반 이상을 이익으로 취득했으며 그 자금이 당해 유력지원자를 통해 원고에게 환류(還流)되고 있다는 사실, 원고가 요코하마시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자신의 유력한 지원자에게 편의를 봐주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음은 명백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비록 피고는 본건 공금횡령기사에서의 ‘공금횡령의혹’, ‘재하청’ 등 표현이 피고편집부의 의견논평이라고 주장하나 일반 독자의 통상적인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 표현은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의견논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본건 공무방기(放棄)기사에 관하여

본건 공무방기기사는 큰 제목이나 소제목에서 ‘해외시찰을 소홀히 하고 카바레식 클럽에서 호스티스 만지기’, ‘갑작스런 취소로 4일간의 기념사업 망쳐’, ‘해외공무를 방기하고’ 등의 문언을 반복해서 사용하

고 있어, 그 기사내용과 합쳐서 생각하면 동 기사는 원고가 공무원 샌디에고 방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고 카바레식 클럽에서의 놀이에 빠져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비록 피고는 원고가 공무를 방기하고 본건 클럽에서 놀고 있었다는 사실은 진실이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편집부가 원고는 요코하마시장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은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견표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5) 또한 원고는 본건 각 기사에 의해 명예감정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나. 본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본건 각 기사의 게재 등이 오로지 공공의 도모할 목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은, 이른바 미팅에서의 원고의 행적 등 원고의 사생활상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사인(私人)의 사생활상의 행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 및 이를 통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는 평가의 한 자료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석된다(최고재판소 1981년 4월 16일 제1소법정 판결). 본건 각 기사가 게재된 주간현대가 발행된 당시 원고는 요코하마 시장직에 있었던 자로서 국민은 그러한 원고의 자질이나 적성 등을 판단할 때 사생활상의 것까지도 포함하여 그 활동이나 발언 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각 기사는 정치가인 원고의 행적이나 발언, 요코하마시장인 원고에 의한 공금의 취급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본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은 모두가 공공의 이

해에 관련한 사실인 동시에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본건 각기사의 적시사실이 진실인지, 또는 피고에게는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1) 본건 미팅기사에 관하여

(가) 민사상의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고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인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을 때, 또는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그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최고재판소 1966년 6월 23일 제1소법정 판결). 그러면 본건 미팅기사의 주요 적시사실의 진실성 유무 및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본건 미팅 기사를 집필, 편집, 게재한 피고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나) 진실성에 관하여

아키토모 및 후유키는 2007년 10월 18일부터 19일 심야에 걸쳐 본건 미팅에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본건 미팅기사 내용과 같은 음란행위를 당했다는 피해여성 A를 장시간에 걸쳐 직접 취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피해여성 A가 본건 미팅기사 게재 사실을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아키토모와 K시의원도 이와 같이 진술하고 N시의원의 진술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때의 취재메모 등 객관적인 취재내용을 명확하게 밝힐 아무런 자료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상기 취재에서 피해여성 A가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그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본건 미팅기사의 내용은 통상 제3자에게 말하기가 거북스러운 화제임이 명백하며, 증인 아키토모의 진술을 전제로 한다면 본건 미팅의 참가자는 본건 미팅에 관해 오토야마로부터 단단히 함구령이 내려져 다른 참가자도 오토야마가 두려워 입 밖에 낼 수 없는 화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여성 A가 K시의원의 주선으로 전국적인 주간지의 갑작스러운 취재요청을 받고 이에 즉각 응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해여성 A의 말을 전제로 하면, 그때까지 수년간 이러한 음란행위의 피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외부적으로 공표한 일이 없는 그녀가 K시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주간지의 취재에 응해 본건 미팅에서의 원고의 음란행위를 외부적으로 공표하기로 결의하기까지 이른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여성 A가 실제로 본건 미팅기사 게재와 같은 사실을 체험한 인물인지 여부에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여성 A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여성 A가 본건 미팅기사 게재의 사실을 실제로 체험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본건 미팅기사의 기재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상당성에 관하여

아키토모는 피해여성 A에 대한 직접취재를 했음이 인정되는바, 아키토모는 피해여성 A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피해여성 A의 진술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여성 A가 취재에 응하기까지의 경위에는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보이고, 피해여성 A를 소개한 M, K, N시의원은 모두가 원고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반 시장파의 정치인이고, 아키토모도 원고와 이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M시의원의 경우 본건 미팅기사에 관한 취재 이전부터 인터넷상의 자기 게시판에 ‘(원고)는 극단적인 2중인격자입니다’, ‘(원고)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써넣기도 하는 등 그 대립상황도 통상적인 정치적 견해로 대립하는 영역을 넘는 양태를 보여 왔음이 인정된다. 아키토모도 그때까지의 취재나 이러한 인터넷상의 정보를 통해 상기와 같은 M시의원의 원고에 대한 행동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본건 미팅에 관한 정보는 M시의

원이 개입하여 K시의원으로부터 아키토에게 전달되었다. 피해여성A도 K시의원의 소개로 아키토 등의 취재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편집부는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K시의원 등과는 별도로 본건 미팅에서의 원고의 음란행위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전기와 같은 M시의원 및 K시의원과 원고와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피고편집부는 이와 같이 입수된 정보나 소개받은 취재원에 근거한 정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하게 그 신빙성을 음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키토의 증언을 전제로 하면, 아키토는 피해여성A로부터 본건 미팅이 이루어진 일시를 들었다고 하므로, 이 점과 관련한 입증취재가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토가 행한 입증취재는 피해여성A가 본건 미팅의 장소라고 설명한 호텔방을 현지 취재하면서 방의 배치가 피해여성A의 설명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뿐이며, 원고의 당해 일정의 활동 기록이나 호텔에 원고와 관련된 인물의 예약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여성A 이외에 본건 미팅에 참가한 자에 대한 취재도 전혀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아키토는 그 밖에도 ①2007년 6월부터 동년 9월 까지의 사이에 요코하마 시의원, 시 관계자, 국정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약 10명 정도를 취재하여 거의 전원으로부터 원고가 여성을 좋아하고, 미팅으로 낱알을 보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고 ②간호학교생으로부터 본건 게재사진을 취득하여 동사진에 올라있는 간호학교생을 직접 취재한 결과 본건 게재사진이 촬영될 때에도 원고와 미팅을 하고 있었으며 장소도 본건 미팅과 동일한 호텔이며, 원고와 왕계임을 즐기면서 키스를 당한 여성도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상기 ① 및 ②의 취재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취재가 이루어졌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취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①의 취재결과 취득된 정보는 아키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날짜와 참가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인 정

보이며 소문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②에 대해서도 본건 게재사진이 미팅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본건 미팅의 참가자도 아닌 간호학교생의 진술을 가지고 원고의 피해여성A에 대한 음란행위의 존재 여부·내용을 입증할만한 정보가 취득되었다고 인정될 수는 없다.

이상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본건 미팅기사에 있어서의 주요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는 없다.

(2) 본건 협박기사에 관하여

(가) 피고는 본건 협박기사의 집필, 편집, 게재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건 협박기사에서의 주요 적시사실이 진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나) 진실성에 관하여

K시의원은 2007년 2월 25일 회합에서 원고에게 ‘시장은 간호학교에 갔었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실, 동년 3월 7일에는 원고로부터 ‘나의 귀에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항간에서 떠도는 너에 대한 말들이 너무 많아. 간호학교에 출입하느냐 어쩌냐는 것도 일일이 너에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아’, ‘네가 그러한 자세로 나온다면 너의 선거 지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고 무서운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는 사실, 동년 3월 18일에는 오토야마로부터 혈서를 쓰라는 위압적인 전화를 2회나 받아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증거로 서약서의 사진 및 협박의 모습을 녹음한 IC녹음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K시의원의 전기 진술에 의해서도 그가 2007년 2월 25일의 파티석상에서 원고에게 파렴치한 난행에 대한 주의를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K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원고가 K시의원을 협박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도 정확한 증거는 없다. 증거로 제출한 서약서의 문구를 보더라도 K시의원이 원고의 여성관계를 탐구한다는 서약을 목적으로 동 서면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IC녹음기의

녹음내용도 그 내용자체가 무엇에 대한 거래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그러한 내용을 녹음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원고와 K시의원 간의 전기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은 2기 시의원선거 직전이고 증거에 의하면 K시의원은 동 선거에서 원고의 지원을 바라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K시의원이 전기와 같은 발언으로 원고와의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K시의원의 전기 진술내용은 그대로 인용할 수가 없으며, 본건 협박기사 게재의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도 정확한 증거는 없다.

(다) 상당성에 관하여

아키토모는 본건 협박 기사를 집필, 편집함에 있어서 K시의원을 직접 취재하여 IC녹음기와 본건 서약서의 사진을 확인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K시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K시의원은 본건 서약서가 작성된 당시에는 원고와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시의원선거에서는 원고의 추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후에는 원고가 소속한 정당을 탈당하여 본건 취재당시에는 원고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K시의원으로부터 제공된 정보의 신빙성 판단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으나 피고는 오토야마나 원고에 대한 충분한 반대취재 등 객관적인 입증취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본건 협박기사의 주요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본건 공금횡령기사에 관하여

(가) 본건 공금횡령기사는 주로 하루나가 취재 및 집필했는데, 피고는 편집, 게재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건 공금횡령기사의 주요 적시사실에 대해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나) 진실성에 관하여

본건 보고서는 요코하마시로부터 진흥협회에 지출된 업무위탁비와 진흥협회에서 S사에 지출한 재위탁비 사이에 약 4,700만엔의 차액이 생기고 있고 발주금액의 산출과정이 부정절하거나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 그 차액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지적은 없다. 더욱이 진흥협회에 들어온 금전이 원고의 정치후원단체를 통해 원고에게 환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어 본건 공금횡령기사의 주요한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상당성에 관하여

하루나는 본건 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본건 보고서를 취득한 후의 취재과정에서, 진흥협회에 원고의 유력한 지원자인 A부회장이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A부회장이 소속한 별개의 단체가 원고의 정치자금 파티를 베푼 사실이 발각된 것을 근거로 본건 횡령 기사를 집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나와 피고 편집부는 항만국이나 진흥협회에 대한 직접취재 등 본건 공금횡령기사의 적시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취재도 하지 않았으며 A부회장에 대한 직접취재의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에게는 본건 공금횡령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본건 공무방기기사에 관하여

(가) 피고는 본건 공무방기기사의 집필, 편집, 게재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건 공무방기기사에서의 주요한 적시사실이 진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나) 진실성에 관하여

원고는 2007년 10월 25일에 샌디에고 방문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샌디에고 주변에서 일어난 산불로 방문을 중지한 것이며 샌디에고측의 이해도 얻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건 공무방기기사의 주요한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상당성에 관하여

본건 공무방기 기사를 집필함에 있어서 아키토모는

본건 클럽에서 원고를 접대한 여성종업원을 상대로 취재했고, 하루나는 L시의원에 대한 취재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키토모의 취재는 원고의 샌디에고 방문이 직전에 취소된 사실 및 방문이 예정된 날에 원고가 연예인과 함께 본건 클럽을 방문한 사실을 가지고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샌디에고 방문을 취소, 공무를 소홀히 하고 본건 클럽에서 호화롭게 놀았다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요코하마시 측에 대한 문의 등 아무런 보강취재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는 본건 공무방기기사의 주요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5) 이상에 의하면 본건 각 기사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집필, 편집, 게재에 관여한 피고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상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주문에 올린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다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64조 본문, 61조를, 가집행의 선언에 대해서는 동법 259조 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판례타임즈』 1359호/P.188~202
- 번역 : 한동원(전 한국언론연구원장)

[미국판례]

해당 방송으로 인해 원고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예비적 금지 명령 신청은 기각된다.

(Arenas VS Shed Media US Inc.)

〈판결 요지〉

가. 원고의 예비적 금지 명령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¹⁾에 기반한 공공의 이익과 원고의 사생활보호를 동시에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같은 농구 선수들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이며, 원고에 대한 언급은 방송의 전체적인 즐거리를 볼 때 부수적인 부분이며 핵심은 원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와 연인관계이던 여성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방송이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이전 여자친구가 프로그램에서 말한 내용이 명예훼손이거나 거짓된 발언이라는 것, 이 프로그램이 원고에 관해 실질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의 행위는 퍼블리시티 권 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를 지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피고가 원고의 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 또한 보이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필요이상으로 원고의 말을 인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해당 방송으로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에 관한 과거 신문기사나, 트위터에 올린 글을 종합적으로 참고했을 때 원고의 명성은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방영된다

1)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 -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크게 실추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중앙지법
(U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원고 : 길버트 아레나스

피고 : 쉐드 미디어 주식회사 등

사건번호 : 2:11-cv-05279-DMG-PJW

판결선고일 : 2011년 8월 22일

결론

이 사건은 원고 길버트 아레나스(Gilbert J. Arenas, Jr.)의 예비적 금지 명령 신청과 이에 대한 피고 쉐드 미디어 주식회사의 기각 요청에 관한 것이다. 심리는 2011년 8월 22일에 열렸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측의 변론서와 구두 변론 등 입장을 들은 후, 법원은 판결을 선포한다. 아래의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며 피고의 항변은 인정한다.

이유

아레나스는 ‘Agent Zero’, 혹은 ‘Hibachi’ 라는 별명을 가진 Orlando Magic 소속의 프로농구선수이다. 그는 2001년 이래로 NBA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NBA ‘올스타상’을 세 번, 2003년에는 ‘NBA에서 가장 향상된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레나스와 고반은 이전에 연인 관계였고 네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다.

쉐드 미디어는 <농구선수의 아내들>이란 프로그램을 케이블 방송인 VH1에서 방영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프로 농구 선수들과 연인관계였거나 현재 연인관계인 여성들이 출연하는데, 내용의 대부분은 출연진과 농구선수의 관계, 그녀들의 인생에 대한 것이다. 그녀들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농구 선수들이 언급되긴

하나 전체 줄거리에서 선수들이 그녀들만큼 핵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농구선수의 아내들>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농구선수의 아내들 : 로스앤젤레스(BWLA)>편은 2011년 8월 29일 첫 방영이 계획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농구선수의 아내들>과 같은 형식으로 제작된다.

고반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계획인데, 아레나스는 자신의 인적사항(identity)이나 트레이드마크(trademarks)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의 보도자료에서는 고반이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팀의 농구선수인 매트 바네스(Matt Barnes)의 약혼자인 글로리아 고반의 언니라고 밝혔다.

아레나스는 쉐드 미디어와 고반에 대해 Lanham법 15조를 근거로 트레이드마크 침해, 트레이드마크 오염, 거짓 홍보와 거짓 보증 등의 이유로 4개의 소송을 신청했다. 또한 아레나스는 피고에게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UCL)은 물론이고 보통법과 법으로 정해진 유사성의 남용과 퍼블리시티권에(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3344)대해 책임을 묻고자 본건 소송을 했다.

2011년 6월 23일, 아레나스는 피고 쉐드 미디어, 로타 고반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며, 2011년 7월 25일에는 예비적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쉐드 미디어는 2011년 8월 1일, 아레나스의 퍼블리시티권 주장에 대해 캘리포니아·반SLAPP법을 근거로 기각을 요청했다. 2011년 8월 8일, 아레나스는 반박서를 제출했고, 2011년 8월 15일에는 쉐드 미디어가 답변서를 제출했다.

I.

1. 예비적 금지명령

금지명령구제를 청구하고자하는 원고는 다음의 사항을 입증해야만 한다. ① 금지명령구제를 통해 보호하려는 가치가 타당해야 하며, ② 금지명령구제의 부재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해야 하고, ③ 원고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④ 구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Toyo Tire holdings of Arms, Inc. v. Cont'l Tire N. Am., Inc., 609F.3d975, 982 (9th Cir. 2010) (Winter v. Natural Res. Def. Council, Inc., 555 U.S. 7, 20, 129 S.Ct. 365, 172 L.Ed.2d 249(2008)참조).

구제는 또한 원고가 '쟁점이 될 만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원고에게 유리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어려움'을 입증하거나 '금지의 부재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금지가 공공 이익에 부합함을 보여준다'는 것에 적합해야 한다(Alliance for the Wild Rockies v. Cottrell, 632 F.3d 1127, 1135 (9th Cir. 2011) (Lands Council v. McNair, 537 F.3d 981, 987 (9th Cir. 2008)참조). 금지명령은 형평법상의 법원의 권한이고 이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또한 '구제를 필요로 하는 모든 환경을 고려한 후에만 가능하다.' (Salazar V. Buono, US, 130 S.Ct. 1803, 1816, 176L.Ed.2d 634 (2010)).

2. 반SLAPP법²⁾

캘리포니아의 SLAPP를 금지하는 법인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425.16은 '비용 및 시간 소모적인 소송제도를 단순한 위촉목적으로 이용하는 소송의 조기 각하'를 허용한다(Northon v. Rule, 637 F.3d 937, 938 (9th Cir. 2011) (Gardner v. Martino, 563 F.3d 981, 986 (9th Cir. 2009) 참조). 반SLAPP법에 따르면 피고는 다음의 상황에서 특별한 기각 요청을 할 수 있다. ① 피고의 행동 이유가 연방 혹은 주법에서 보호

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거한다, ② 피고의 행동은 공공의 화제와 연관이 있다, ③ 원고는 그의 승소 근거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Cal. Civ. Proc. Code 425.16(b)).

승소 근거를 입증하기위해 원고는 '법적 관점에서 판결에 사용된 발의와 비교할만한'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Price v. Stossel, 620 F.3d 992, 1000 [38 Med.L.Rptr.2153] (9th Cir. 2010) Metabolife Int'l Inc. v. Wornick, 264 F.3d 932, 940 [29 Med.L.Rptr.2505] (9th Cir.2001)참조). 따라서 원고는 '만약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신뢰할만하다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내용이 법적으로 충분하고 법적 사실이 처음 볼 때 진실되게 보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Metabolife, 264 F.3d at 840 참조). 만약 원고가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증거가 원고에 유리한 판결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피고의 반SLAPP법은 허용된다 (Metabolife, 264 F.3d at 840 참조).

II.

1. 아레나스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

아레나스는 보통법의 의사 부정유포의 다섯 번째 조항과 상표 침해에 대한 첫 번째 소권을 바탕으로 금지명령구제를 신청했다. 그는 피고의 다음 행위를 금했다. ① 리얼리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의 상표권을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과 그리하여 고반이 프로그램이 출연하는 것, ② <농구선수의 아내들>이나 농구선수들과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어떠한 용어도 프로그램의 제목, 예고편 혹은 프로그램 그 자체에서

2) SLAPP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은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소송으로 비판이나 반대를 포기할 때까지 법적 방어 비용을 부담지우는 방법으로 비판자들을 검열하고 위협하며 침묵을 유도하는 소송이다. 이에 반SLAPP법(Anti SLAPP)이 제정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92년 이후 자연인으로서의 개인 또는 비정부단체를 상대로 공적 토의 가치가 있는 논점에 관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인해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러한 소송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가 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소 각하를 청구하면 민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민사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증거에 의해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참고 표현의 자유와 법으로서의 명예: 미 캘리포니아 주 반부패소송 법익의 한국 수용 가능성, 이우영, 신아시아연구소, 2003)

사용하는 것, ③ 농구선수들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둘 이상의 참가자들을 출연시키는 등 농구선수들과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가. 아레나스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

(1) 보통법상의 인격권 침해

캘리포니아의 보통법은 ‘유명인 등 상업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그의 인격권(Identity)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Hoffman v. Capital Cities/ABC, Inc., 255 F.3d 1180, 1183 [29 Med.L.Rptr. 1993] (9th Cir. 2001) (Waits v. Frito-Lay Inc., 978 F.2d 1093, 1098 [20 Med.L.Rptr. 1585] (9th Cir.1992) 참조)).

상업적 도용에 관한 보통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원고는 다음의 사항을 입증해야한다. ① 피고가 원고의 인적사항을 사용함, ② 원고의 이름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피고의 이익을 위해 상업적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부정 유용함, ③ 사전 동의를 부재, ④ 이로 인한 원고의 피해 등이다(Stewart v. Rolling Stone LLC, 191 Cal. App. 4th 664, 679, 105 Cal. Rptr. 342 [10 Med.L.Rptr. 1073] (1983)참조).

쉐드 미디어 주식회사는 아레나스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박할 수 없다. 법원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라는 관점에서 아레나스의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 고려한다. 따라서 아레나스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법원은 쉐드 미디어 주식회사가 수정 헌법 제1조를 들어 반박한 것과 위의 ①, ②에 집중적으로 국한하여 분석한다.

(가) 아레나스의 퍼블리시티권

쉐드 미디어 주식회사가 아레나스의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현재의 기록에만 의존해서는 결정하기 어렵다. 아레나스는 BWLA 프로그램 방영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쉐

드 미디어의 진술과 예고편에 기반해 프로그램의 성격을 추측한다. 아레나스가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들은 홍보물에서 원고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쉐드 미디어 주식회사는 ‘미래의 홍보물에서는 원고와 고반의 과거의 관계에 대해 명백하게 밝힐 예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반이 BWLA에 출연해 아레나스와 과거의 관계에 대해 말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비록 프로그램의 초점이 여성 출연진들이라 할지라도, BWLA가 The Real Housewives of Orange County 등의 다른 리얼리티쇼와 차별되는 점은 출연진들이 아레나스와 같은 프로 농구선수와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고반이 아레나스에 대해 노골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아레나스의 유명인으로서의 명성과 관계가 되는지가 관건이다.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한다.

아레나스는 ‘인격권’이라는 말은 ‘폭넓게 적용되어야 하며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한다(White v. Samsung Elecs. Am., Inc., 971 F.2d 1395 [20 Med.L.Rptr.1457] (9th Cir.1992); Carson v. Here’s Johnny Portable Toilets, Inc., 698 F.2d 831 [9 Med.L.Rptr. 1153] (6th Cir. 1983) (applying Michigan common law); Motschenbacher v. R.J. Reynolds Tobacco Co., 498 F.2d 821 (9th Cir. 1974) 참조).

일반적인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옳다. 캘리포니아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인정한다(Midler v. Ford Motor Co., 849 F.2d 460, 463 [15 Med.L.Rptr. 1620] (9th Cir.1988) (Motschenbacher, 498 F.2d at 824) 참조).

유명인의 인격권 침해가 중요한 이유는 대중에게 공개되는 자료는 그의 이름이나 사진 혹은 그와 관련된 서명이나 기호들을 직, 간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긴 가운을 입고 금발의 가발을 썼으며 큰 장신구를 한 여성의 형태를 갖춘 로봇’이 Wheel of Fortune 게임

세트처럼 보이는 게임 판에서 목판 글자를 뒤집는 것이 여성 영화배우인 Vanna White을 떠올리게 함은 분명하다(White, 971 F.2d at 1399). 마찬가지로 Johnny Carson's의 문구인 'Here's Johnny'는 카슨이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는 Lothar Motschenbacher의 경주용 차량에 특별하게 새겨진 표식이 운전자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만약 유명인으로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명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Carson, 698 F.2d at 837).

대조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아레나스의 이름을 <농구선수의 아내들>의 맥락 속에서 사용했다. 만약 그렇다면 고반이 BWLA에서 아레나스를 지칭하기 위해 그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그가 유명한 농구선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레나스는 상업적 부정 유용에서 첫 번째 두 항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

스웨드 미디어 주식회사는 'BWLA의 프로그램 제목과 고반의 BWLA 출연이 원고의 이름이나 초상권 혹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만약 그녀가 출연하여 아레나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법원은 스웨드 미디어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바대로, 그녀의 출연이 아레나스의 유명인으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고반은 다른 농구 선수 부인의 언니이다. 이로 인해 아레나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아도 그녀의 출연 동기는 설명가능하다. 스웨드 미디어 주식회사는 고반을 그녀의 여자 형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국한시켰다.

아레나스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공식 보도자료가 발표된 같은 날, 다른 언론에서는 고반과 아레나스의 관계에 대해 밝히며 이것으로 피고가 취할 이익과 원고의 손해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이 만연하고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큰 오늘날, 유명인들의 관계에 대한

보도는 일상적인 언론의 행동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대선 준비단계에서 당시의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이 당시의 부통령이었던 체니의 먼 친척이었음이 널리 보도되었는데 이는 두 당사자 모두 알리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다(Hassani Gittens, *Dissing Cousins: Obama, Cheney, Bush Related*, N.Y. Post, Oct. 17, 2007, at 12.).

스웨드 미디어 주식회사가 'BWLA에서 고반은 아레나스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기를 삼갔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전혀 사실로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농구선수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 말하면서 그 일부분으로 언급될 수 있다. 아마도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전 남자친구라는 점에서 매우 어색한 일이다.") 고반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아레나스에 대해 어떤 점이었던 말하고 싶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고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아레나스를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

프로그램이 아레나스보다는 '여성들의 삶과 그들의 애정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피고가 원고의 인격권을 어떻게 침해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사실 여부이다." (White, 971 F.2d at 1398). Midler 사건에서 포드 자동차는 출판 광고물에서 Bete Midler의 이름이나 사진을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유명 여가수'는 광고에서 나오는 노래의 목소리가 Midler의 목소리를 따라했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말했다(Midler, 849 F.2d at 461).

고반의 BWLA출연이 아레나스의 다른 상표는 차지하더라도 그의 이름을 부정 유용했다는 점은 그럴듯하다. 법원은 다음으로 부정 유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항하는 다른 항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나) 피고의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항변

캘리포니아 법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다음의 두 적극적인 항변에 직면한다. '변

형적 이용' 항변과 '공공의 이익' 항변이다(Hilton v. Hallmark Cards, 599 F.3d 894, 909 [38 Med.L.Rptr. 1753] (9th Cir. 2010)). 슈드 미디어 주식회사는 두 가지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법원도 이를 인정한다.

1) 변형적 이용 항변

변용 항변에 해당하기 위해서 피고는 '중요한 변형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거나 그 가치가 유명인의 명성으로부터 주로 연유한 것이 아니어야 함' 을 입증해야한다(Comedy III Prods., Inc. v. Gary Saderup, Inc., 25 Cal. 4th 387, 407, 106 Cal. Rptr. 2d 126 [29 Med.L.Rptr. 1897] (2001)).

[변형적 이용 항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위는 매우 넓다. 즉, "수정헌법 제1조와 퍼블리시티권 사이의 이익형량"이다(Winter v. DC Comics, 30 Cal. 4th 881, 885, 134 Cal. Rptr. 2d 634 [31 Med.L.Rptr. 1774] (2003)).

이익형량은 "법원이 이른바 피고의 표현행위가 크고 명백하게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만큼 표현적인 가치가 있는 내용물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비교하도록 한다"(Kirby v. Sega of Am., Inc., 144 Cal. App. 4th 47, 61, 50 Cal. Rptr. 3d 607 [35 Med.L.Rptr. 1075] (2006)).

행위의 가치가 주로 유명인의 명성이라기보다 창조자의 창의성, 능력 등 다른 원인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기에 충분한 변형적 요소들을 갖추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Comedy III Prods., Inc. v. Gary Saderup, Inc., 25 Cal. 4th at 407).

반면, 창조자의 기술이나 재능이 유명인의 명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의 평소의 모습을 그리는 것에 명백히 주목적이 있다면, 창조자의 표현의 자유권보다 퍼블리시티권이 우선한다.]

현재 기록에 따르면 BWLA에서 아레나스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맥락에 따른 부

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농구 선수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농구 선수들과 관계가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변형적으로 보인다.

아레나스는 BWLA가 그의 인격권을 "오직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Vanna White v. Samsung videocassette recorders나 Bette Midler v. Ford cars 와는 달리, 아레나스와 BWLA에는 분명한 관계가 존재한다. 슈드 미디어 주식회사의 프로그램은 농구 선수와 사귀었거나 그와 결혼한 여성에 대한 것이다. 아레나스는 BWLA의 출연진 중 한명과 사귀었던 사람이다.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아레나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슈드 미디어 주식회사의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항변을 무효로 할 만큼 그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2) 공공의 이익 항변

공공의 이익 항변에서는 "언론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공중이 알아야 할 권리와 언론의 자유다."임을 강조한다(Hilton, 599 F.3d at 912 (Montana v. San Jose Mercury News, Inc., 34 Cal. App. 4th 790, 793, 40 Cal. Rptr. 2d 639 [23 Med.L.Rptr. 1920] (1995)참조)).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항변은 '최근의 거의 대부분의 보도'와 '개인의 성취, 삶의 방식, 전문직이나 사회적 위치 등으로 인해 그들의 행동에 대해 광범위하고 적법한 주목을 끌 수 있는 사람'에까지 확장된다." (Downing v. Abercrombie & Fitch, 265 F.3d 994, 1001 [29 Med.L.Rptr. 1073] (1983)). "성취... 대중에 의해 만들어진 명성이나 악명... 프로 운동 선수와 같은... 이들은 인쇄,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매체에서 언급되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적법하다." (Gionfriddo v. Major League Baseball, 94 Cal.App. 4th 400, 410, 114 Cal. Rptr. 2d 307 (2001) (Carlisle v. Fawcett Publ' ns, Inc., 201

Cal. app. 2d 733, 746-47, 20 Cal. Rptr. 405 (1962) 참조).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보호는 “시사 뉴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연예 오락적 목적의 기사도 사실에 기반을 둔 기사와 같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 (Stewart, 181 Cal. App. 4th at 681) “공공의 관심은 사람들의 성취나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것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Hilton, 599 F.3d at 912 (Dora v. Frontline Video, Inc., 15 Cal. app. 4th 536, 542, 18 Cal. Rptr. 2d 790 [21 Med.L.Rptr. 1398] (1993) 참조).]

아레나스는 그의 가족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그의 유명세와 충분히 관련되어있지 않다는 것과 이로 인해 BWLA가 그의 인격권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수천만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아레나스가 자신의 문란한 행실에 대해 트위터 글로 말하는 것을 받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레나스는 피고들의 행동은 실질적 악의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어떠한 항변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항변에 퍼블리시티권이 우선하기 위해서 원고는 피고가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명백하고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한다(Stewart, 181 Cal. App. 4th at 689). 다시 말하자면, 원고는 피고가 명예훼손적인 말을 했으며 이는 잘못 알고있거나 진실을 신중하지 못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N.Y.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84 S.Ct. 710, 11 L.Ed.2d 686 [1 Med.L.Rptr. 1527] (1964) 참조).

아레나스는 고반이 프로그램에서 그에 대해 말한 것이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 악의가 있음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심리에서 아레나스는 피고가 BWLA의 홍보물에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에 만족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아레나스의 주

장을 프로그램의 맥락상에서 첫째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인물의 이름과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정식 발간물의 부수적인 홍보물에서 진실되게 사용하는 것에까지 헌법적 보호는 확장된다(Cher v. Forum Int'l, Ltd., 692 F.2d 634, 639 [8 Med.L.Rptr. 2484] (9th Cir. 1982) (Guglielmi v. Spelling-Goldberg Prods., 25 Cal. 3d 860, 873, 160 Cal. Rptr. 352 [5 Med.L.Rptr. 2208] (1979) (Birds, J. Concurring) 참조).

따라서 BWLA의 홍보물은, 홍보물에서 공인인 아레나스가 이 프로그램을 허가했다고 거짓으로 말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의 부정 유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원은 아레나스의 보통법 상 상업적 부정 유포에 근거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그럼 이제 원고의 상표권 침해 청구소송에 대해 검토한다.

(2) 상표권 침해

아레나스는 상표권 침해 청구에 대해 혼동하는 부분이 있다. 그는 침해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지 못했고 이것이 그의 어떠한 상표권을 침해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아레나스는 ‘GILBERT J. ARENAS, JR., GILBERT ARENAS, GIL ARENAS’ 등에 그의 상표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표는 그의 인격권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고반의 출연과 프로그램의 제목은 원고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피고가 그의 상표를 BWLA의 홍보와 예고편 등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한다.

(가) 피고의 <농구선수의 아내들>의 사용

Lanham법에 의해 보호받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주장하려면 원고는 피고가 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여기에서는 시청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한다(Fortune Dynamic, Inc. v. Victoria's Secret Stores Brand Mgmt., Inc., 618 F.3d 1025, 1030, 1050 (9th Cir. 1999)). 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덟 항목을 각각 증명해야한다.

① 상표의 유사성, ② 원고 고유 상표의 힘, ③ 상품 혹은 서비스의 유사성 혹은 관계성, ④ 피고가 상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의도, ⑤ 실질적인 혼동의 증거, ⑥ 사용된 마케팅 수단, ⑦ 다른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 ⑧ 피고의 상품 구매자들이 이를 인식하는 정도 등이다(AMF Inc. v. Sleekcraft Boats, 599 F.2d 341, 348-49 (9th Cir. 1979)). 이는 유연하게 적용가능하고 각 항목의 상대적 중요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 보호에 있어 웨드 미디어 주식회사가 프로그램의 제목을 통해 아레나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기각된다. 아레나스의 상표권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웨드 미디어 주식회사의 프로그램 제목과는 완전히 다르다. 아레나스와 <농구선수의 아내들>을 혼동한 시청자는 없고 아레나스는 이러한 실질적 혼동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한편 아레나스가 농구 선수들과 사귀었던 여성들에 대한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따라서 웨드 미디어 주식회사와 이름 혹은 명성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도 증명하지 못했다. 즉, 아레나스는 <농구선수의 아내들>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나) 기명의 공정한 사용³⁾

아레나스는 BWLA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한다. 미연방 제9항소법원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조항(Sleekcraft Factors)은 피고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

는 물건을 지칭하기 위해 상표를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Toyota Motor Sales, USA., Inc. v. Tabari, 610 F.3d 1171, 1175 (9th Cir. 2010) (참조생략)). 이러한 이용에 있어서 “기명의 공정한 사용”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침해가 아니며, 기명의 공정한 사용 항변에 있어서 법원은 ① 상품이 상표 없는 상태에서 식별 가능한가, ② 피고가 필요 이상의 상표를 사용했는가, ③ 피고가 상표권의 원작자에게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 명시했는가 등을 고려해야한다.

피고가 실명 이외의 방법으로 아레나스를 지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피고가 아레나스에 대한 어떠한 것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기에, 이 시점에서 그들이 필요 이상의 말을 인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렵다. 고반과 웨드 미디어 주식회사가 BWLA에서 아레나스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레나스가 프로그램을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 상식적으로 볼 때 남자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견해에 남자가 동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레나스는 그의 상표권 침해를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 아레나스는 근거를 입증하지 못했고 그의 주장 중 어떠한 것도 심각한 의문제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금지 명령을 신청할 권한이 없다. 나머지 사항들 또한 금지 명령 청구 필수 조건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나. 아레나스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해의 가능성

아레나스는 만약 금지 구제가 없다면 자신의 명성에 해를 입는데 따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한다. 특히 그는 <농구선수의 아내들> 시리즈를 “부정한 문제들을 다루며”, “드라마적인 측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당당한”, “고양이 싸움”이라 표현했다. 아레나스는 피고가 자신과 관련하

3) 제품과 서비스, 기업 등을 식별하기 위해서 상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품을 정확하게 식별하기위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허가를 얻을 필요는 없다.

여 말하는 것은 “자신의 평판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며 그의 명성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 주장한다.

스웨드 미디어 주식회사는 귀중한 참고자료로 원고에 대한 신문기사와 그가 작성한 트위터 글을 제출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명성은 본 건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방영된다 하더라도 크게 실추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스웨드 미디어 주식회사의 주장을 빌리자면, 가령, 잠재적인 갈등에 아레나스가 공적으로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고양이 싸움”이 아레나스의 평판을 ‘어떻게’ 손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아레나스는 2010년 초에 Washington Wizards 라커룸에서 도박 빚에 대해 다투던 중 팀 동료들 총으로 위협한 사건으로 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리고 그는 합법한 자격 없이 권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레나스는 트위터에서 여성과 다른 집단들에 대한 견해를 펼치기도 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되고 상스러우며 공격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아레나스는 프로그램에 고반이 출연하는 것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트위터 글을 작성함으로써 그 자신이 이미 이 프로그램에 관여했다. 이러한 트위터 글에서 아레나스는 다음과 같이 그의 견해를 밝혔다. “고반이 어떤 말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가 방송출연으로 돈을 벌면 나는 그녀에게 돈을 덜 주어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레나스는 “대부분의 농구 선수들은 다음의 사항을 알지 못한다. 전 부인이나 전 여자친구인 출연진은 농구 선수들이 프로그램을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 아레나스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전 여자친구 혹은 전 부인보다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부분에 더 관심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레나스가 이와 같은 고반의 BWLA 출연 예정에 주목하게 만드는 트위터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그가 프로그램과의 관련을 통해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잃게 만든다.

Brandt v. Superior Court, 67 Cal. 2d 437, 443,

62 Cal. Rptr. 429 (1967)를 참조하며 아레나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가대 소년’ 이든 아니든, 혹은 ‘아주 명성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예 훼손을 당한다”. 그러나 이는 논점을 벗어난 것이다. 문제는 아레나스의 명성이 법원의 금지 명령 구제가 없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인가의 여부이다. 아레나스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이미 많이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BWLA와의 관련성이 그의 명성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주장은 명백한 증거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손상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

다. 이익형량

법원은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스웨드 미디어를 지지한다. Washington Post에 보도된 것과 같이, 아레나스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반과 결별한 사실을 밝혔고 이는 “그를 ‘파괴’ 시키기 위해 전 약혼자를 ‘파멸’ 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미 BWLA에 고반이 출연하는 것을 그 자신과 연관시켜 대중들에게 알렸다. 따라서 본 건 보도로 인한 그의 명성에 대한 잠재적 손해는 미약하다.

반면 스웨드 미디어 그룹은 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면 엄청난 곤경에 직면하게 된다. VH1 채널은 이러한 소송 중에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그들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할 것이며 이는 스웨드 미디어 그룹이 광고 수입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정당한 지불도 장담하기 어려우며, 업계 내 명성에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 공공의 이익

마지막으로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다. “법원은 예비적 금지 명령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수정헌법 제1조에 기반한 공공의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Sammartano v. First Judicial District Court, 303 F.3d 959, 974 (9th Cir. 2002)).

비록 대중이 지적 재산권 보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처럼 그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가 약화되는 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줄어든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은 금지명령구제에 우선한다.

2. 쉐드 미디어 주식회사의 반SLAPP청구

아레나스의 퍼블리시티권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대중의 관심과 관계된 문제에서 피고의 표현의 자유권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쉐드 미디어 주식회사에 반SLAPP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만약 피고의 행위가 의사를 표현하는 성격의 것이었다면 법은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하다(Hilton, 599 F.3d at 904.). 이 사건은 명백히 이에 해당한다. 행위가 대중의 관심에 관한 것이기 위해서는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 하며 사회적이거나 혹은 저속한 주제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두 번째 항목 또한 충족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쉐드 미디어 그룹의 기각 요청을 인정한다.

III.

위에서 제시한 이유들로 인해, 아레나스의 예비적 금지 명령 청구는 기각되고, 아레나스의 주장에 대한 쉐드 미디어 주식회사의 기각요청은 인정된다. 단,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아레나스의 제5행위 원인은 수정의 여지를 남기고 각하된다. 단, 아레나스는 2011년 9월 6일 이전까지 수정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항하는 변론을 그 이후 15일 내로 제출할 수 있다. 2011년 8월 29일 쉐드 미디어의 항소 공판은 이곳에서 인도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Media Law Reporter』

Vol. 39/P. 2535-2543

번역 : 이슬기(University of Toronto, east asian studies, 석사과정)

외국신문평의회 사례

[영국 사례 1]

실제 있지도 않았던 법정 내부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을 실제처럼 보도한 것은 ‘정확성’ 위반이다.

신청인 : Press Complaints Commission

언론사 : Daily Mail

인용된 조항 : 윤리강령 제1조(정확성)

불만내용

PCC는 <Daily Mail>지 2011년 10월 3일자 “유죄 : 항소 각하, 망연자실한 Amanda Knox” 제하의 온라인 기사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보도윤리강령 제1조(정확성)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이 건 신청은 인용되었다.

언론사는 Amanda Knox가 이탈리아에서 열린 살인죄에 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Knox는 승소했다. 해당 기사는 2분 정도 게시된 후 삭제, 정확한 판결을 보도한 기사로 대체되었다.

다수의 신청인들은 해당 기사가 판결 내용을 잘못 보도했을 뿐 아니라, 검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2명의 젊은이가 감옥에서 머물렀던 것은 슬픈 일이었다” 대신에 “정의는 실현되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명백하게 유죄평결을 암시한 점, 또한 “가족,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껴안고 있는 동안 Knox는 의자에 주저앉아 마구 흐느꼈다”며 법정의 풍경을 가상으로 묘사한 점, “Meredith Kercher의 가족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줄곧 앞을 바라봤으며, 잔뜩 흥분해 있는 Knox의 가족을 한 번 건너다봤을 뿐” 이고, “Knox가 교도소 경비원들에 이끌려 감방 호송 밴이 있는 곳으로 호송

되었으며, 자살에 대비한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묘사한 점 등을 지적했다.

언론사는 잘못된 판결 내용이 웹사이트에 90초 가량 게재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언론사는 이처럼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사전에 2개의 기사를 준비하는 언론사의 관행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먼저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후 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최초의 몇 개의 뉴스가 잘못된 판결을 보도하게 되었으며, 기사 중 검사의 발언은 관련 재판 전에 검사 측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서, 항소심이 각하되기 전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탈리아 당국이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관례적으로 자살 대비 감시를 받게 된다고 기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설명했다.

언론사는 실수를 한 기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실시했고, 독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사과문도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정확한 판결 내용은 다음날 지면에서 보도되었으며, 언론사는 불만 신청 처리 절차에 대한 내부 점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즉 앞으로는 미리 관행적으로 작성해놓는 기사는 단순히 판결 내용과 팩트에 근거한 상황묘사만 포함시키도록 하고, 불확실한 예측에 근거한 인용구나 표현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보도윤리강령 제1조(정확성)에 따르면 언론은 부정

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건에서 언론사는 법정 내에서 혼선이 생김에 따라 항소심 판결 내용을 잘못 보도하였다. 따라서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독자에 대한 설명 및 사과와 함께 정확한 평결을 서둘러 기사화했음을 감안할 때, 제1조 제2항에 따른 균형적이고 적절한 대응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건 기사의 판결에 대한 법정 안 사람들의 반응, Knox의 이후 행동에 대한 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사는 현재 눈앞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을 보도한 것처럼 묘사하였는데(법정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생생한 묘사)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명백히 허용될 수 없다.

위원회는 언론사가 결과를 예측하여 미리 기사를 작성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언론사가 때로 독자들에게 현재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특히 재판과 같은 사건을 보도할 경우에는 보도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있지도 않았던 법정 내부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을 실제처럼 보도한 것은 강령 제1조 위반이다.

위원회는 잘못된 기사의 게재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불만신청을 감안하여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유사한 사안들에 관한 보도 관행을 바꾼 언론사의 신속한 반응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부정확한 묘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이후의 기사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국사례 2]

여러건의 성범죄 혐의가 있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는 고인을 빗대어 “변태”라고 표현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보도이다.

신청인 : Rod Hemley

언론사 : Herald & Post (Luton)

인용된 조항 : 윤리강령 제5조(슬픔 및 충격에의 침해)

불만내용

신청인(Rod Hemley)은 2011년 9월 28일자 <Herald&Post>지 “L&D(Luton & Dunstable 병원)의 변태, 시체로 발견” 제하의 기사가 보도윤리강령 제5조(슬픔 및 충격에의 침해)와 제1조(정확성)를 위반하였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다.

제5조에 대한 신청은 인용되었다. 제1조 위반 또한 인정되나, 언론사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충분한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된다.

언론사는 1면에 신청인의 동성 배우자인 - 스스로 목숨을 끊은 - Ameet Mohabeer의 죽음에 대해 보도하였다. 사망 당시 Mr. Mohabeer는 남성 성추행 13건, 성폭행 4건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사건 전부가 그가 근무 중이던 Luton & Dunstable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변태(pervert)”라는 단어를 헤드라인에 사용한 것은 신중하지 못할 뿐더러 부정확한 묘사라고 주장하였다. Mr. Mohabeer는 사망 전 범죄를 부인하고 있었고, 범죄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신청인은 이미 법정에서 Mr. Mohabeer가 무죄임을 항변하여 이에 대한 기일이 몇 달 후로 잡힌 상황이었는데도 2011년 10월 3일이 재판이라고 보도하는 등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해당 보도가 독자들로 하여금 고인이 재판기일이 다가오자 출석을 기피하여 자살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언론사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며칠 후가 재판기일이라는 쟁점과 관련, 사실관계가 부정확했음을 인정하였고 1면에 정정 및 사과글을 게재하고 온라인 기사도 수정하였다. 그러나 언론사는 여전히 “L&D(Luton & Dunstable 병원)의 변태가 죽은 채 발견되다”라는 해

드라인을 사용하면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 언급하였다. Mr. Mohabeer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유일한 피의자였으며, 몇몇 피해자는 ‘정의를 실현되기 전에 사망했다’ 며 언론사에 연락해 오기도 했고 주장했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보도윤리강령 제5조는 개인의 슬픔이나 충격이 수반되는 사건을 취재할 때는 동정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녀야 하며,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인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보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세세한 사실관계는 매우 신중히 보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원회가 이 사건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L&D의 변태가 죽은 채 발견되다”라는 제목이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언론사가 Mr. Mohabeer의 죽음에 대한 각종 의혹과 그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이 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언론사의 주장에 동의하며, 법정 절차를 보도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또한 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환자의 반응을 보도한 것 또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강령 제5조와 관련한 다른 쟁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Mr. Mohabeer는 기사가 게재되기 얼마 전에 사망했다. “변태(pervert)”라는 단어는 매우 경멸적인 구어체 표현인데다, 해당 단어는 1면 기사의 헤드라인에 게재되었다.

사망 당시 Mr. Mohabeer는 용의자였을 뿐 일련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는 없으므로, 위원회는 해당 단어가 용인될 수 없는 불필요한 표현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게재된 이 기사는 보도윤리강령 제5조에 비추어볼 때 신중하지

못한 보도였으므로 이 건 신청을 인용한다.

그리고 언론사는 Mr. Mohabeer의 재판 일자에 대해 오보한 것을 시인했다. Mr. Mohabeer가 10월 3일 재판에 출석하기로 되어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9월 15일에 이미 법정에서 무죄임을 주장하였고, 이후 재판 일정은 2012년 2월 27일로 잡혀져 있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취재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명백히 잘못된 사실관계를 보도했으므로 제1조 위반임은 명확하다. 따라서 정정 및 사과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언론사의 당연한 조치였다.

언론사는 2011년 10월 13일자 1면에 정정 및 사과 기사를 내보냈다. 위원회는 지면 및 크기에 대한 아무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됨으로써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나, 해당 정정보도가 1면에 게재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특히 PCC에 사건이 계류 중일 경우에는 정정 및 사과보도를 보도하기 이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회는 사과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언론사가 제1조 제2항에 따라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한다.

[영국사례 3]

사고 후 응급구조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의없이 게재해선 안된다.

신청인 : Mrs. Leigh Blows

언론사 : The Northern Echo

인용된 조항 : 윤리강령 제5조(슬픔 및 충격에의 침해)

불만내용

신청인(Mrs Leigh Blows)은 The Northern Echo가 게재한 2개의 기사가 보도윤리강령 제5조(슬픔 및 충격에의 침해)를 위반하였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첫

번째는, 2011년 7월 4일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상에 추락한 파일럿, 운 좋게 탈출” 제하의 기사이며, 두 번째는 2011년 7월 5일자 지면 및 온라인에 게재된 “추락한 파일럿, 한 시간 반 동안 고립”이라는 기사이다.

문제의 기사는 신청인의 남편(파일럿)이 지역의 한 평야에 추락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는 구조팀이 위치를 추적하는 동안 한 시간 반 이상을 비행기 잔해 속에 갇혀있었다. 추락사고 다음날인 7월 4일자 기사에는 비행기의 일련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사진이 실렸다.

7월 5일자 기사에서는 신청인의 남편이 응급구조를 받고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내보냈다.

신청인은 7월 5일자 기사에 실린 사진이 충상을 입은 남편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신청인은 해당 사진이 남편이 심각한 쇼크와 고통에 빠져있을 때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사유지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에서 남편의 성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진 속의 얼굴형, 옷, 비행기 일련번호 등이 보도되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으며, 실제로 보도 이후 친구들로부터 수많은 전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7월 4일자 기사에 실린 사진에 비행기의 일련번호가 보도되었으므로 그 동안 비행 관련 정보를 함께 나누고 일련번호를 공개하여 연락해온 사람들이 그날 비행기 사고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언론사는 해당 지역의 경찰, 소방대원, 구급요원 등이 모두 수색 및 구조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게재된 사진은 수색에 참여한 지역 수색구조팀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이 구조팀은 이미 수년 간 언론사에 본 건 사진과 유사한 이미지들을 제공해왔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구조절차는 BBC가 촬영하여 이후 응급서비스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제작되기도 하였으며, 사전에 경찰 측을 취재하여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하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7월 5일자 기사에 실린 사진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도 이해되는 바이나, 보도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보도윤리강령 제5조는 슬픔이나 충격이 수반되는 사건에 대해 취재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문제의 사진이 제3자에 의해 촬영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진을 보도하는 언론사는 해당 사진의 내용과 취득 경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위원회는 7월 4일자 기사에 게재된 사진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추락사고의 당사자가 신청인의 남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남편에 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개인의 특성을 보도한 바는 없다.

위원회는 구조요원들이 집중 수색을 벌이는 비행기 추락 사고의 통상적인 모습을 묘사한 해당 사진의 게재로 인해 언론사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취재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7월 4일자에 게재된 사진은 보도윤리강령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7월 5일자 기사에 실린 사진은 신청인의 남편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쇼크·혼란에 빠진 채 의료 조치를 받고 있는 장면이다.

위원회는 강령 제5조가 심각한 사건사고로 인해 개인이 가장 나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그러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이에 관한 사건이 접수된 경우 “시점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독자들에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중대한 사건을 알려야 한다는 언론의 기능을 감안하면 바로 여기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 독자에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에 대해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사의 취재 의도는 매우 명백하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고 바로 직후에 사전 동의도 없이 의료조치를 받고 있는 환자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언론사가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7월

5일자 사진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을 인용한다.

신청인은 또한 언론사가 보도윤리강령 제3조를 위반하여 그녀의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다.

위원회는 제3조에 대한 내용은 제5조와는 별개로 판단하였는데, 사건 당시 신청인의 남편을 보여주는 장면은 이후 동의를 거쳐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 보도되었다. 신청인은 본 건 사진의 게재와 방송보도를 별개로 여기고 있다. 즉, 후자는 사건 이후 남편이 충분한 동의를 할 수 있을 때 협의 과정을 거쳐 몇 달 뒤에 방영되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당시에는 언론사가 언제 BBC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될지 그 시기는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조는 “신청인 스스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면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가 공공의 영역에 속하거나 향후 그렇게 될 것인지” 여부도 고려사항이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남편이 구조 장면을 방영해도 좋다고 동의한 바 있고, 이는 사건 현장을 담은 단순한 이미지 사진보다 훨씬 침해가 클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사진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제3조 위반 부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다.

[호주사례]

‘망명신청자’의 신분인 개인의 범죄를 보도하면서 ‘망명신청자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한 것은 심각한 실수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1517

신청인 : Penny Campton

언론사 : Northern Territory News

개요

APC(호주언론평의회)는 2011년 8월 5일자

〈Northern Territory News〉 1면에 실린 표현에 대한 신청 사건을 심의하였다. “망명신청자들이 호주인을 죽이려고 위협했다고 법원이 전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사는 얼마 전에 소년원에서 2명의 경비를 칼로 찔렀던 어느 망명신청자가 이번에는 호주인들을 죽이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해당 사건이 단 한명의 망명신청자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에서 ‘많은 망명신청자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사는 부정확하고 불공정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신청인은 언론사 측의 사과와 문제가 된 제목을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사는 제목에 복수형을 사용한 것이 기사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언론사는 지난 7월 22일자 기사와 같이 그 동안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들의 지지를 호소해 왔음을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실수가 정정보도나 사과문을 게시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나, 신청인의 의견을 기사화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신문사 스스로 그 실수를 인정하고 정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했다.

결정 이유

위원회는 해당 제목이 즉각적인 정정과 유감의 뜻을 표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실수였으며, 따라서 신청인의 반론을 신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되며, 위원회는 언론사가 실수를 인정한 시점에서 즉시 취했어야 할 조치를 지금이라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언론법제관련문헌

- 고민수 (2012. 3. 30).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헌법적 쟁점과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미디어 혁명과 정치 혁명: 개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가 바꾼 정치 혁명' 춘계 특별 세미나 발제문.
- 권헌영 (201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구조적 한계와 과제. 『언론과 법』, 제10권 2호, 83~110.
- 김남희 (2011). 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형사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에 대한 평석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와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분석, 평가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0권 2호, 509~534.
- 김민배 (2012. 2. 24). 정치·선거와 SNS. 관훈클럽, 한국언론진흥재단주최 'SNS와 선거보도' 세미나 발제문.
- 김용주 (201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10권 2호, 279~306.
- 김용희 (2012. 2. 24). SNS 선거운동의 허용과 언론의 역할. 관훈클럽, 한국언론진흥재단주최 'SNS와 선거보도' 세미나 발제문.
- 김은미 · 이주현 (2011). 뉴스 미디어로서의 트위터. 『한국언론학보』, 제55권 6호, 152~180.
- 김종서 (2012. 3. 16). 인터넷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 검토. 한국헌법학회주최 '제71회 정기학술대회: 2012년 양대 선거의 헌법적 현안과 쟁점' 발제문.
- 문재완 (2011).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 의의와 한계 -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10권 2호, 1~37.
- 박광선 (2011). 인터넷상 뉴스기사의 무단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Law & Technology』, 제7권 6호, 91~100.
- 박성환 (2011). '명예'의 사회적 논리와 기능. 『문화와 사회』, 제11권, 7~64.
- 서미라 (2012. 2. 7). 트위터의 시민저널리즘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주최 '제16회 전국 대학원생 컨퍼런스' 발제문.
- 설진아 (2012. 2. 13). SNS와 저널리즘의 위기: 소셜 뉴스와 소셜 저널리즘.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문화연구소주최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언론문화 그리고 이론화' 학술세미나 발제문.
- 송경재 (2012. 3. 30). 소셜 미디어와 10.26 서울시장 선거: '나꼼수 효과'는 존재하는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미디어 혁명과 정치 혁명: 개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가 바꾼 정치 혁명' 춘계 특별 세미나 발제문.

- 신용태 (2012. 2. 8). 인터넷 상에서 자기정보의 통제, 잊혀질 권리. (사)인터넷윤리학회주최 '제1회 토론회: 인터넷, 윤리를 만나다' 발제문.
- 심석태 (2011). 공인 개념의 현실적 의의와 범위에 대한 고찰 - 법무부 '수사공보준칙' 에 나타난 공인 개념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10권 2호, 207~236.
- 양재규 (2012. 1). 법을 알고 기사쓰기 78 - '언론 소송' 법리는 비교적 단순, 결론은 그때그때 달라. 『신문과 방송』, 통권 493호, 89~93.
- 양재규 (2012. 2). 법을 알고 기사쓰기 79 - 인물평 중심 '특정인 띄우기' 기사 선거 공정성 해쳐. 『신문과 방송』, 통권 494호, 76~79.
- 양재규 (2012. 3). 법을 알고 기사쓰기 80 -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 495호, 82~85.
- 오택섭 (2012. 2. 24). SNS의 Fact checking. 관훈클럽, 한국언론진흥재단주최 'SNS와 선거 보도' 세미나 발제문.
- 유일상 · 유계환 (2011). 표현과 소통으로서 인터넷 댓글과 그 책임에 관한 일 고찰. 『언론과 법』, 제10권 2호, 307~340.
- 이수범 (2012). 소셜 미디어의 정치적 이용이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홍보학연구』, 제16권 1호, 78~111.
- 이재진 · 이정기 (2011). 한국과 중국 명예훼손법상의 '공인' 개념에 관한 비교 연구-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0권 2호, 237~277.
- 이제영 (2012. 2. 13). 소셜 미디어 현상에 관한 대학생 인식 유형 연구: Q방법론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문화연구소주최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언론문화 그리고 이론화' 학술세미나 발제문.
- 이진로 (2012. 3. 9). 디지털리즘 시대에 있어서 선거방송보도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디지털리즘 시대의 정책과 보도' 특별 세미나 발제문.
- 임영덕 (201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제53호, 73~112.
- 장철준 (2011). 정치광고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언론과 법』, 제10권 2호, 181~205.
- 장하용 (2011). 매체 간 경쟁의 심화에 따른 안내적 저널리즘의 약화.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6호, 48~70.
- 전 영 (2012). 프랑스 방송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54호, 221~253.
- 전지나 (2012. 2. 7). 트위터 이용자들의 뉴스 생산, 유통, 소비 인식에 관한 연구: Q방법론을 통한 인식 유형 분석. 한국언론학회주최 '제16회 전국 대학원생 컨퍼런스' 발제문.
- 정성욱 (2012. 2. 13). 한국의 법 전통과 소셜 미디어 규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문화연구소주최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언론문화 그리고 이론화' 학술세미나 발제문.

- 정재민 · 박종구 (2012. 2. 13). 경제뉴스의 경쟁적 소분석 : 신문, 방송, 인터넷, SNS의 이용자 층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문화연구소주최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언론문화 그리고 이론화’ 학술세미나발제문.
- 조은희 (2012). 미디어 수용자 조사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설문문항 연구 : 신문이용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20권 1호, 47~81.
- 최규문 (2012. 2. 13). SNS 소통의 인프라로서 소셜캐피털과 신뢰에 관한 재인식: [나는 꿈수다] 신드롬에서 보이는 SNS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문화연구소주최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언론문화 그리고 이론화’ 학술세미나발제문.
- 최은경 (2012. 4. 14).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공영방송의 책무에 관한 연구 : BBC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언론과 사회> 연구분과주최, ‘월례 세미나’ 발제문.
- 하명호 (2012. 2. 8).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규제의 한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주최 ‘인터넷 선거 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세미나발제문.
- 한상기 (2012. 2. 8). SNS에서의 개인권리 침해 현황 및 과제. (사)인터넷윤리학회주최 ‘제1회 토론회: 인터넷, 윤리를 만나다’ 발제문.
- 허윤철 · 박한우 외 (2012. 2. 13). 선거와 소셜텔레비전 :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에 나타난 서울 시장 보궐선거 토론회.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문화연구소주최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언론문화 그리고 이론화’ 학술세미나발제문.
- 홍원식 (2012. 3. 30). SNS와 정치참여 : 선거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미디어 혁명과 정치 혁명 : 개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가 바꾼 정치 혁명’ 춘계 특별 세미나발제문.
- 황성연 (2012. 1. 13). 공공채널의 시청률 제고를 위한 편성방안. 한국광고홍보학회주최 ‘종편시대 공공채널의 공익성 강화 방안’ 세미나발제문.
- 황용석 (2012. 2. 8). 인터넷 포털의 선거정보 서비스의 자율규제 방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주최 ‘인터넷 선거 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세미나발제문.
- 황유선 (2012. 2. 13). 정보 소통 채널로서 SNS.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문화연구소주최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언론문화 그리고 이론화’ 학술세미나발제문.